

# 국내산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이드



한국원산지정보원

Korea Institute of Origin Information

# 목차

국내산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이드

## 제1장 가이드 기본 정보 / 1

- 1. 선정 기준 ..... 1
- 2. 제공 정보 ..... 1
- 3. 가이드 제공 물품 ..... 2
- 4. 유의사항 ..... 2

## 제2장 국내산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법 / 3

- 1. 신청 자격 ..... 3
- 2. 대상 품목 ..... 4
- 3. 원산지판정 기준 ..... 5
- 4. 발급기관 및 제출서류 ..... 7
- 5. 신청 절차 ..... 8

## 제3장 국내산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이드 / 10

- 1. 실내 LED 다운라이트 ..... 10
- 2. 태양광발전모듈 ..... 15
- 3. 의류(남성용 윈드재킷) ..... 20
- 4. 마이크로폰 ..... 26
- 5. 네트워크스위치 ..... 31
- 6. 사무용 책상 ..... 36
- 7. 남성용 운동화 ..... 41
- 8. 보건용 마스크 ..... 46
- 9. 금속제창(알루미늄) ..... 52
- 10. 롤업셰이드(블라인드) ..... 57

## 제4장 FTA-PASS를 활용한 국내산 원산지판정 시뮬레이션 / 63

- 1. 원산지관리 통합 플랫폼 FTA-PASS 소개 ..... 63
- 2. 국내산 원산지증명서 판정 시뮬레이션 서비스 개요 ..... 64
- 3. (자료 작성) 원산지판정용 BOM 구성 ..... 65
- 4. (정보 등록) FTA-PASS 접속 및 작성자료 등록 ..... 66
- 5. (원산지판정) 원산지판정 수행 ..... 68
- 6. (서류 다운로드) 대한상공회의소 제출서류 다운로드 ..... 70

## 부록 용어집 / 73

## 제1장

## 가이드 기본 정보

## 1. 선정 기준

- 다음의 물품을 기준으로 시의성 및 적정성을 고려하여 선정
  - 국내산 원산지증명서 기발급 물품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 물품
  - 관세청·조달청 보도자료 등을 통해 이슈화된 원산지표시 위반 물품

## 2. 제공 정보

- 시나리오(물품 정보, BOM, 원가 정보 및 제조공정)를 설정하여 원산지판정, 유의사항 등에 대한 정보 제공
  - **물품 정보**: 물품 기본 정보, 조달청 물품분류번호, HS Code
  - **BOM, 원가 정보 및 제조공정**: BOM 및 원재료별 HS Code, 원가 정보, 제조공정
  - **원산지판정 절차**: CTSH와 부가가치기준 충족 여부 및 기타 원산지판정 유의사항
  -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22건의 FTA별 원산지결정기준(2025년 1월 기준)

### 3. 가이드 제공 물품

□ 가이드 제공을 위해 선정된 10개 물품은 아래와 같음

[표 1-1] 가이드 대상 물품

| 연번 | 물품명          | 연번 | 물품명         |
|----|--------------|----|-------------|
| 1  | 실내 LED 다운라이트 | 6  | 사무용 책상      |
| 2  | 태양광발전모듈      | 7  | 남성용 운동화     |
| 3  | 의류(남성용 윈드재킷) | 8  | 보건용 마스크     |
| 4  | 마이크로폰        | 9  | 금속제창(알루미늄)  |
| 5  | 네트워크스위치      | 10 | 롤업셰이드(블라인드) |

### 4. 유의사항

- 각 물품의 BOM 및 원가 정보, 제조공정은 원산지판정 방법 및 절차 설명을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것이며, 사용되는 원재료, 각 기업의 보유 기술, 내부 정책 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음
- 본 가이드에서 제공하는 각 물품의 HS Code 및 조달청 물품분류번호는 특정 물품에 대한 시나리오 구성을 위해 가장 유사한 번호로 분류한 것이며, 구성 재질, 용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각 가이드별 상품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임
- 본 가이드에서 제공하는 판정 정보는 법률적 책임이 없으므로 참고사항으로 활용

## 제2장

# 국내산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법

### 1. 신청 자격

- 생산자: 통상적으로 제조시설을 갖추고 물품을 직접 생산하는 자
  - o 생산자 본인이 단순 가공 활동만 수행하는 경우 생산자로 볼 수 없음
    - 예) 여러 가지 물품을 조합하여 세트물품으로 구성하는 등
- 임가공 위탁자: 제조시설 없이 국내 제3자에게 임가공을 의뢰하여 물품을 생산하는 경우(임가공 위탁자를 생산자로 같음)

[표 2-1] 임가공 위탁자 요건

| 요건   | 내용  |
|------|---|
| 요건 1 | 위탁자가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 제작 등)할 것                |
| 요건 2 | 모든 주재료(부재료 및 보조원재료 제외)를 위탁자의 계산과 책임으로 구입하여 제조업체에게 제공할 것 |
| 요건 3 | 제조업체로 하여금 제공받은 원재료로 제품을 생산하도록 할 것                       |
| 요건 4 | 제조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인수하여 위탁자 책임으로 직접 판매할 것                    |

\* OEM 주문자는 생산자로 볼 수 없음

\*\* 출처: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

- 생산자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자

## 2. 대상 품목

□ 아래 ①을 충족하면서 ②대상 품목에 해당하는 것

① 제조공정이 아래의 단순한 가공 활동에 해당하지 않을 것

○ “단순한 가공 활동”이란 특별한 기술이나 특별히 제작·설치된 기계·장비·기기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일반적인 작업을 의미

[표 2-2] 단순한 가공 활동

| 내 용   |  |
|---|--|
| 1. 운송 또는 보관 목적으로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 행하는 가공 활동          |  |
| 2. 선적 또는 운송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가공 활동                           |  |
| 3. 판매 목적으로 물품의 포장 등과 관련된 활동                             |  |
| 4. 제조·가공 결과 HS 6단위가 변경되는 경우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단순 가공 활동으로 간주 |  |
| 가. 통풍   | 나. 건조 또는 단순가열(볶거나 굽는 것을 포함한다)  |
| 다. 냉동, 냉장   | 라. 손상 부위의 제거, 이물질 제거, 세척   |
| 마. 기름칠 녹이기 또는 보호를 위한 도색 도장                              | 바. 거르기 또는 선별   |
| 사. 정리, 분류 또는 등급선정                                       | 아. 시험 또는 측정  |
| 자. 표시나 라벨의 수정 또는 선명화                                    | 차. 가수, 희석, 흡습, 가염, 가당, 전리  |
| 카. 각피, 탈각, 씨제거 및 신선 또는 냉장육류의 냉동, 단순 절단 및 단순 혼합          | 타. 별표 9에서 정한 HS 01류의 가축을 수입하여 해당국에서 도축하는 경우 같은 별표에서 정한 품목별 사육기간 미만의 기간 동안 해당국에서 사육한 가축의 도축 |
| 파. 펴기, 압착   | 하. 가목부터 파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가공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별도로 환정하는 단순한 가공 활동                                 |

출처: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수입 물품의 원산지판정 기준)제8항

② HS Code 기준 다음에 해당할 것

○ 제1류~제24류, 제30류, 제33류, 제48류, 제49류, 제50류~제58류, 제70류, 제72류, 제87류(제8701호~제8708호의 일반차량), 제89류 외의 품목

[그림 2-1] 국내산 원산지증명서 신청 대상 품목

|    | 0          | 1          | 2            | 3         | 4           | 5          | 6          | 7             | 8         | 9              |
|----|------------|------------|--------------|-----------|-------------|------------|------------|---------------|-----------|----------------|
| 0  |            | 산동물        | 육과 식용 철육     | 야채류       | 낙농품         | 기타 동물성 생산품 | 산수목꽃       | 채소            | 과실 견과류    | 커피 향신료         |
| 10 | 곡물         | 일가류·전분     | 채유용 증자 인삼    | 식물성 엑스    | 기타 식물성 생산품  | 동·식물성유지    | 육어류 조제품    | 당류·설탕과자       | 코코아, 초코렛  | 곡물·곡분의 주제품과 빵류 |
| 20 | 채소·과일의 조제품 | 기타의 조제식료품  | 음료·주류·식초     | 조제사료      | 담배          | 토석류·소금     | 광·슬랙·회     | 광물성 연료 에너지    | 무기화합물     | 유기화합물          |
| 30 | 의약품품       | 비료         | 염료·안료·페인트·잉크 | 항료·화장품    | 비누·계면활성제·왁스 | 단백질·전분     | 화약류·성냥     | 필름·인화지·사진용 재료 | 화학공업 생산품  | 플라스틱과 그 제품     |
| 40 | 고무와 그 제품   | 원피·가죽      | 가죽제품         | 모피·모피제품   | 목재·목탄       | 코르크와 그 제품  | 조물재료의 제품   | 펄프            | 지아 판지     | 서적·신문·인쇄물      |
| 50 | 견·견사·견직물   | 양모·주모      | 면면사·면직물      | 마유의 사와 직물 | 인조 필라멘트 섬유  | 인조 스타이플 섬유 | 워딩부직포      | 양탄자           | 특수직물      | 침투·도포한 직물      |
| 60 | 편물         | 의류(편물제)    | 의류 (편물 제외)   | 기타 섬유제품   | 신발류         | 모자류        | 우산·지팡이     | 조제 우모·인조제품    | 석시멘트·석면제품 | 도자 제품          |
| 70 | 유리         | 귀석·반귀석·귀금속 | 철강           | 철강제품      | 동과 그 제품     | 니켈과 그 제품   | 알루미늄과 그 제품 | (유·보)         | 납과 그 제품   | 아연과 그 제품       |
| 80 | 주석과 그 제품   | 기타의 비금속    | 비금속제 공구      | 각종 비금속 제품 | 보일러·기계류     | 전기제품       | 철도차량       | 일반차량          | 항공기       | 선박             |
| 90 | 광학·정밀기기    | 시계         | 약기           | 무기        | 가구류·조명기구    | 완구·운동용품    | 잡품         | 예술·공예품        |           |                |

□ : 대상 품목

■ : 일부 대상 품목

□ : 비대상 품목

출처: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판정 기준) 제1항

### 3. 원산지판정 기준

□ 다음 중 하나의 원산지판정 기준을 충족할 것

- CTSH+부가가치기준 51% 혹은 부가가치기준 85% 중 선택 가능하며, 천일염의 경우 국내에서 완전생산된 경우에만 국내산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

[표 2-3]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한 원산지판정 기준

| 판정 기준            | 설명   |
|------------------|--|
| CTSH+ 부가가치기준 51% | 우리나라에서 제조·가공 과정을 통해 수입원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물품을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 가격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제조원가의 51% 이상인 경우 |
| 부가가치기준 85%       | 우리나라에서 제조·가공 과정을 통해 물품을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 가격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제조원가의 85% 이상인 경우                              |
| WO               | 천일염은 국내에서 완전생산되어야 함  |

출처: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판정 기준) 제2항, 제3항

□ 부가가치 계산을 위한 식은 아래와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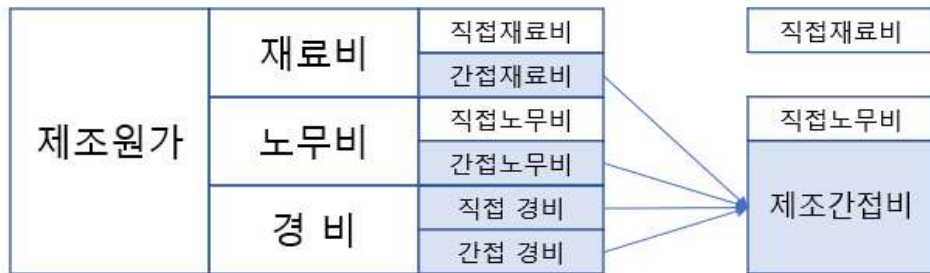
[그림 2-2] 부가가치기준 계산식

$$\text{부가가치 계산식} = \frac{\text{제조원가} - \text{수입원료 가격(CIF 기준)}}{\text{제조원가}} \times 100$$

- 제조원가: 제조원가는 공장도 공급가액(최초판매가격)에서 판매·관리비 및 이윤을 공제한 금액으로 산출함
  - 제조원가에 대한 입증서류는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에 기초하며, 원가계산용역기관이 계산한 원가로 대체하는 경우 해당 용역기관의 원가계산보고서 제출
- 수입원료 가격: 수입원료 가격은 CIF 기준으로 실제 거래된 가격을 의미함
  - 원재료 단가를 확인할 수 있는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수입신고필증 등에 기초
  -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입증할 수 없는 원료의 경우 수입원료로 판단함

[표 2-4] 제조원가 개념

- 제조원가란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함
  - 전통적으로 제조원가를 재료비와 노무비, 경비로 구분하나, 이는 직접원가와 간접원가를 구분하지 않은 구분 방식으로 각 비용은 다시 직접원가와 간접원가로 나눌 수 있음
    - 직접원가는 직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 간접원가는 간접재료비와 간접노무비, 경비로 구성
    - 재료비와 노무비의 간접비용과 경비를 합한 것이 제조간접비임



- 제조원가의 산출은 공장도 공급가액(=공장도가격)에서 판매·관리비 및 이윤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며, 이때 공장도 공급가액이란 생산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판매한 가격으로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말함
  - 운송(수송)을 위한 포장·용기의 경우 최종제품의 원산지판정 시 재료로 고려하지 않지만 소매용 포장·용기의 경우 원산지별로 구분하여 재료 가격에 계상

[그림 2-3] 공장도가격 원가 구성





#### 4. 발급기관 및 제출서류

□ 발급기관: 대한상공회의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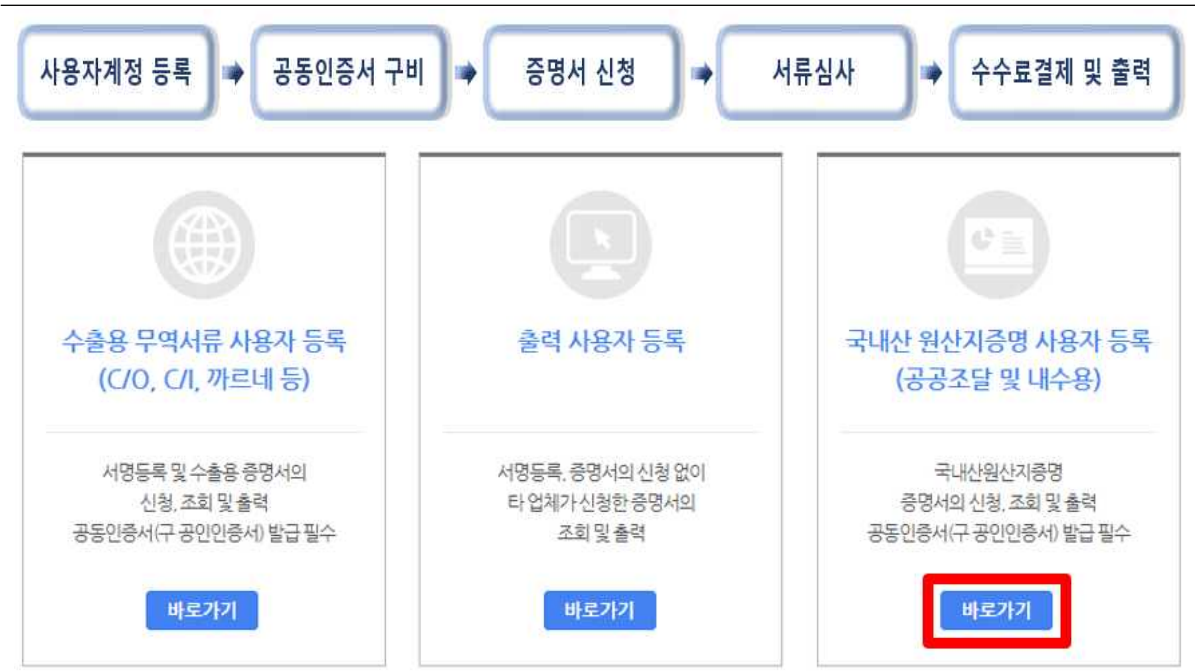
□ 제출서류

- ① 국내생산물품등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시스템 입력)
- ② 물품 설명 및 제조공정도
- ③ 공장등록증 또는 임가공계약서 사본
  - 임가공제조의 경우, 해당 임가공 위/수탁자 공장등록증을 모두 제출
  - 공장 미등록 업체인 경우, 공장등록증에 같음하여 건축물 관리대장 제출(공장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용도로 허가받은 것)
- ④ (생산자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자가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 ⑤ 자재명세서(BOM)
- ⑥ 제조원가 입증서류(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 원가계산용역기관이 계산한 원가로 대체하는 경우, 해당 용역기관에서 작성한 원가계산보고서 제출
- ⑦ 원재료 입증서류
  - 수입원료: 수입신고필증, (국내 거래물품)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 국내산 원료: 국내산 원산지증명서 또는 국내산 원재료 확인서
- ⑧ 이 외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규정에 따라 심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서류
- ⑨ 위 사항에도 불구하고 천일염의 경우, ❶천일염 국내산 원산지증명서 신청인  
 약약서, ❷국내 소금 검사 확인증, ❸소금제조업 허가증 또는 천일염전  
 사용허가 확인서, ❹천일염 이력제 보안라벨 서류 제출

## 5. 신청 절차

- 국내산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원하는 자는 인터넷 홈페이지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cert.korcham.net)에 접속한 후 아래 절차를 따라 신청 가능함

[그림 2-4] 대한상공회의소 국내산 원산지증명서 신청 절차



출처: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

- 사용자계정 등록: 기업 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상공회의소에 등록하여 증명서의 위조나 타인의 도용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이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가 필요
- 공동인증서 구비: 당사자 확인을 위해 전자서명 정보가 필요하며, 신청서 전송 시 신청자 명의의 공동인증서를 구비하여야 신청서 전송이 가능함
- 증명서 신청 및 서류심사: 원산지증명 신청 후 처리기간은 접수일로부터 3일이며, 평일 업무시간 이외에 신청할 경우 다음날(업무일 기준)에 접수됨
  - 자료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심사 기간이 연장될 수 있으며, 신청서 기재사항 및 제출서류를 확인하여 흠결이 없을 경우 증명서 발급
- 수수료 결제 및 원본 출력: 회원의 경우 33,000원, 비회원의 경우 66,000원의 수수료를 결제해야 하며, 원본은 1부만 출력 가능

[그림 2-5] 국내산 원산지증명서 견본

| <b>국내 생산품 원산지증명서</b>   |  |  |
|--|--|--|
| 발급번호 :   |  | 참조번호 :   |
| <b>1. 신청자</b>  | <b>2. 용도</b>   |  |
| <input type="checkbox"/> 생산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생산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자<br>서울상공회의소<br>123-45-68889<br>최태원<br>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 상공회의소회관 2층 원산지증명센터<br>02-6050-3303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입찰용<br>입찰기관<br>입찰명<br>2023-03-15 ~ 2025-03-31<br><input type="checkbox"/> 기타 |  |
| <b>3. 물품 정보</b><br>(품명, 모델정보, 규격, 수량 및 단위 등 상세정보)  | <b>5. HS Code</b><br>(6단위)   | <b>6. 원산지 적용기준</b>   |
| 품명<br>모델명<br>규격<br>★상세정보☆  | 26.90  | <input checked="" type="checkbox"/> CTSH+RVC51%<br><input type="checkbox"/> RCV85% |
| <b>4. 생산자 정보</b>   |  |  |
| 상호<br>123-88-88888<br>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남대문로) 2층 원산지증명센터  |  |  |
| 「대외무역법」 제38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에 따라<br>상기 제품은 국내산 원산지 기준에 부합하는 한국산임을 증명합니다.  |  |  |
| <b>7. 인증기관</b>   | <b>8. 발급인장 및 서명권자 사인</b>   |  |
|  |  |  |
|  | <b>9. 발급일자</b>   |  |

출처: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

# 제3장 국내산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이드

## 1. 실내 LED 다운라이트

|    | <b>물품명</b><br>실내 LED 다운라이트          |         |     |     |           |    |          |           |    |       |           |    |      |           |    |           |           |    |         |           |    |  |
|--|-------------------------------------|---------|-----|-----|-----------|----|----------|-----------|----|-------|-----------|----|------|-----------|----|-----------|-----------|----|---------|-----------|----|--|
|  | <b>조달청<br/>물품분류번호</b><br>3911151502 |         |     |     |           |    |          |           |    |       |           |    |      |           |    |           |           |    |         |           |    |  |
|  | <b>HS Code</b><br>제9405.11호         |         |     |     |           |    |          |           |    |       |           |    |      |           |    |           |           |    |         |           |    |  |
| <b>BOM</b>   |                                     |         |     |     |           |    |          |           |    |       |           |    |      |           |    |           |           |    |         |           |    |  |
| <table border="1"> <thead> <tr> <th>원재료명</th> <th>HS Code</th> <th>원산지</th> </tr> </thead> <tbody> <tr> <td>PCB</td> <td>제8534.00호</td> <td>미상</td> </tr> <tr> <td>LED Chip</td> <td>제8541.41호</td> <td>미상</td> </tr> <tr> <td>WAFER</td> <td>제8542.31호</td> <td>미상</td> </tr> <tr> <td>WIRE</td> <td>제8544.42호</td> <td>미상</td> </tr> <tr> <td>Converter</td> <td>제8504.40호</td> <td>미상</td> </tr> <tr> <td>Housing</td> <td>제9405.99호</td> <td>미상</td> </tr> </tbody> </table> | 원재료명                                | HS Code | 원산지 | PCB | 제8534.00호 | 미상 | LED Chip | 제8541.41호 | 미상 | WAFER | 제8542.31호 | 미상 | WIRE | 제8544.42호 | 미상 | Converter | 제8504.40호 | 미상 | Housing | 제9405.99호 | 미상 | <b>원가 정보</b><br> |
| 원재료명   | HS Code                             | 원산지     |     |     |           |    |          |           |    |       |           |    |      |           |    |           |           |    |         |           |    |  |
| PCB  | 제8534.00호                           | 미상      |     |     |           |    |          |           |    |       |           |    |      |           |    |           |           |    |         |           |    |  |
| LED Chip   | 제8541.41호                           | 미상      |     |     |           |    |          |           |    |       |           |    |      |           |    |           |           |    |         |           |    |  |
| WAFER  | 제8542.31호                           | 미상      |     |     |           |    |          |           |    |       |           |    |      |           |    |           |           |    |         |           |    |  |
| WIRE   | 제8544.42호                           | 미상      |     |     |           |    |          |           |    |       |           |    |      |           |    |           |           |    |         |           |    |  |
| Converter  | 제8504.40호                           | 미상      |     |     |           |    |          |           |    |       |           |    |      |           |    |           |           |    |         |           |    |  |
| Housing  | 제9405.99호                           | 미상      |     |     |           |    |          |           |    |       |           |    |      |           |    |           |           |    |         |           |    |  |
| <b>제조공정</b>  |                                     |         |     |     |           |    |          |           |    |       |           |    |      |           |    |           |           |    |         |           |    |  |
| LED 모듈 제작(납땀) → Converter 결합 → 결선 및 배선 → 케이스 조립 → 검사 → 출고  |                                     |         |     |     |           |    |          |           |    |       |           |    |      |           |    |           |           |    |         |           |    |  |
| <b>CTSH 충족 여부</b><br><b>충족</b>   | <b>부가가치기준 충족 여부</b><br><b>불충족</b>   |         |     |     |           |    |          |           |    |       |           |    |      |           |    |           |           |    |         |           |    |  |
| <b>단순가공 충족 여부</b><br><b>충족</b>   |                                     |         |     |     |           |    |          |           |    |       |           |    |      |           |    |           |           |    |         |           |    |  |
| <b>유의사항</b>  |                                     |         |     |     |           |    |          |           |    |       |           |    |      |           |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산지를 미상으로 기재한 원재료는 실제 해당 물품이 국내에서 생산되었다 할지라도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제6항에 따라 수입원료로 취급함</li> </ul>  |                                     |         |     |     |           |    |          |           |    |       |           |    |      |           |    |           |           |    |         |           |    |  |

① 물품 정보

□ 기본 정보

- 전기에너지를 빛으로 변환하는 기술을 적용한 실내용 조명기구로 천장에 구멍을 뚫어(타공) 설치하는 매립형 LED 조명

□ 조달청 물품분류

[표 3-1] 실내 LED 다운라이트 조달청 물품분류번호

| 물품분류번호 |    |    |    |    | 품명                         |
|--------|----|----|----|----|----------------------------|
| 39     |    |    |    |    | 전기시스템, 조명, 부품, 액세서리 및 보조용품 |
| 39     | 11 |    |    |    | 조명기구 및 액세서리                |
| 39     | 11 | 15 |    |    | 옥내 조명 및 설비                 |
| 39     | 11 | 15 | 15 |    | 다운라이트 설비                   |
| 39     | 11 | 15 | 15 | 02 | LED 다운라이트                  |

□ HS Code

- 제9405호 해설에서 “이들 그룹의 조명기구는 모든 재료(제71류의 주 제1호에서 열거한 재료는 제외한다)로 만들 수 있으며, 모든 광원[예: 양초·기름·석유·파라핀(또는 kerosene)·가스·아세틸렌·전기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이 호의 전기식 조명기구에는 램프홀더·스위치·플렉스와 플러그·변압기 등이 부착되는 경우도 있으며, 또한 형광등 부착구의 경우에 있어서는 스타터(starter)나 안정기(ballast)를 부착한 것도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제9405.11호에 엘이디 광원에 전용되도록 설계된 것이 특기되어 있으므로 제9405.11호로 분류함

[표 3-2] 제9405호 품목분류

| 품목번호 |    |    |    | 호의 용어  |
|------|----|----|----|--|
| 9405 |    |    |    | 조명기구[서치라이트(searchlight)·스포트라이트(spotlight)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고,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name-plate)와 이와 유사한 물품(광원이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부분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      | 1  |    |    | 상들리에(chandelier)와 그 밖의 천장용·벽 부착용 전기식 조명기구[공공공지(公共空地)나 통행로에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   |
|      | 11 | 00 | 00 | 발광다이오드(엘이디) 광원에 전용되도록 설계된 것  |
|      | 19 |    |    | 기타   |
|      |    |    |    | ⋮  |

## ② BOM, 원가 정보 및 제조공정

### □ BOM

o LED Chip, 회로기판(PCB), 변환기(Converter), Housing(몸체) 등으로 구성

[표 3-3] 실내 LED 다운라이트 BOM

| 원재료명      | HS Code   | 원산지 | 가격    | 합계     |
|-----------|-----------|-----|-------|--------|
| PCB       | 제8534.00호 | 미상  | 700   | 14,000 |
| LED Chip  | 제8541.41호 | 미상  | 900   |        |
| WAFER     | 제8542.31호 | 미상  | 100   |        |
| WIRE      | 제8544.42호 | 미상  | 300   |        |
| Converter | 제8504.40호 | 미상  | 6,000 |        |
| Housing   | 제9405.99호 | 미상  | 6,000 |        |

### □ 원가 구성

[표 3-4] 실내 LED 다운라이트 원가 정보

| 총원가       |           |           |          |              |           | +        | 이윤 | = | 공장도<br>가격 |
|-----------|-----------|-----------|----------|--------------|-----------|----------|----|---|-----------|
| 제조원가      |           |           |          | 판매비 및<br>관리비 | 제조<br>간접비 |          |    |   |           |
| 직접재료비     |           | 직접<br>노무비 |          |              |           | 직접<br>경비 |    |   |           |
| 국내산<br>재료 | 수입산<br>재료 | 직접<br>노무비 | 직접<br>경비 | 제조<br>간접비    |           |          |    |   |           |
| 0         | 14,000    | 12,500    |          | 1,500        | 2,000     | 30,000   |    |   |           |

### □ 제조공정

o LED 모듈 제작(납땀) → Converter 결합 → 결선 및 배선 → 케이스 조립 → 검사 → 출고

### ③ 원산지판정

- CTSH 충족 여부:** 6단위 기준 완제품의 HS Code(제9405.11호)와 수입산 재료의 HS Code가 모두 상이하므로 CTSH 조건 충족

[표 3-5] 실내 LED 다운라이트 CTSH 충족 여부

| 물품명          | HS Code   | 원재료명      | HS Code   |
|--------------|-----------|-----------|-----------|
| 실내 LED 다운라이트 | 제9405.11호 | PCB       | 제8534.00호 |
|              |           | LED Chip  | 제8541.41호 |
|              |           | WAFER     | 제8542.31호 |
|              |           | WIRE      | 제8544.42호 |
|              |           | Converter | 제8504.40호 |
|              |           | Housing   | 제9405.99호 |

- 부가가치기준 충족 여부:** 47.2%로 부가가치기준 51% 기준 불충족

[표 3-6] 실내 LED 다운라이트 부가가치기준 충족 여부

| 물품명          | 공장도 가격   | 관관비 및 이윤 | 제조원가   | 수입산 재료 가격 |
|--------------|--|----------|--------|-----------|
| 실내 LED 다운라이트 | 30,000   | 3,500    | 26,500 | 14,000    |
| 역내부가가치 비율    | $\frac{26,500 - 14,000}{26,500} \times 100 = 47.2\%$ |          |        |           |

- 단순공정 충족 여부:** PCB, LED Chip 등의 원재료를 납땜하여 LED 모듈이 생산되고 생산된 LED 모듈을 변환기 및 몸체와 결합·조립하는 과정을 통해 완제품이 생산되므로 조명의 실질적 성능과 관련된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어 단순공정 조건을 충족함<sup>1)</sup>
- 유의사항:** 원산지를 미상으로 기재한 원재료는 실제 해당 물품이 국내에서 생산되었다 할지라도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제6항에 따라 수입원료로 취급함

1) 유사사례: 램프(인천지방법원 선고 2010노3691) 참고

④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표 3-7] 실내 LED 다운라이트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 구분   | 협정    | 원산지결정기준  |
|------|-------|--|
| 유럽   | EFTA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
|      | 영국    |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 EU    |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 튀르키예  |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 이스라엘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또는,<br>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아시아  | 중국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또는<br>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 인도    | 1. 수출국에서 완전하게 생산된 경우, 또는<br>2. HS 6단위 이상의 세번변경이 발생하고, 역내부가가치 비율이 35% 이상이 되는 경우   |
|      | 아세안   | 가. 수출국에서 완전하게 생산된 경우, 또는<br>나. HS 4단위 이상의 세번변경이 발생하였거나, 역내부가가치 비율이 40% 이상이 되는 경우   |
|      | 베트남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계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이상일 것  |
|      | 캄보디아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이상일 것  |
|      | 필리핀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이상일 것  |
|      | 싱가포르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인도네시아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또는<br>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 호주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또는<br>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RCEP | RCEP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계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이상일 것   |
| 아메리카 | RCEP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이상일 것  |
|      | 캐나다   |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br>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9405.91호부터 소호 제9405.99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9405.91호부터 소호 제9405.99호까지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
|      | 미국    |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405.10호 내지 제9405.6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br>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관계없이, 제9405.91호 내지 제9405.99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405.10호 내지 제9405.6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br>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br>1. 집적법 35% 이상, 또는<br>2. 공제법 45% 이상 |
|      | 중미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9405.10호부터 제9405.6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br>공제법으로 역내가치 포함 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
|      | 콜롬비아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br>아래의 역내가치 포함 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br>1. 집적법 30% 이상, 또는<br>2. 공제법 40% 이상   |
|      | 페루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또는<br>2.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 칠레    |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제9405.10호 내지 제9405.60호로의 변경, 또는 다른 6단위 세번으로부터 제9405.10호 내지 제9405.60호로의 변경 및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45% 이상, 집적법 사용시 30% 이상인 경우   |



## 2. 태양광발전모듈

|   | <b>물품명</b><br>태양광발전모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조달청<br/>물품분류번호</b><br>261116920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HS Code</b><br>제8541.43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BOM</b>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table border="1"> <thead> <tr> <th>원재료명</th> <th>HS Code</th> <th>원산지</th> </tr> </thead> <tbody> <tr> <td>Solar Cell</td> <td>제8541.42호</td> <td>중국</td> </tr> <tr> <td>Frame</td> <td>제8541.90호</td> <td>미상</td> </tr> <tr> <td>Glass Cover</td> <td>제7007.19호</td> <td>미상</td> </tr> <tr> <td>Back Sheet</td> <td>제3921.90호</td> <td>KR*</td> </tr> <tr> <td>Eva</td> <td>제3921.90호</td> <td>KR*</td> </tr> <tr> <td>J-box</td> <td>제8536.90호</td> <td>KR*</td> </tr> <tr> <td>Ribbon</td> <td>제7409.31호</td> <td>KR*</td> </tr> <tr> <td>기타</td> <td>제39류, 제71류</td> <td>KR*</td> </tr> </tbody> </table> <p>* 원산지증빙자료 제출</p> | 원재료명                                | HS Code           | 원산지 | Solar Cell | 제8541.42호 | 중국 | Frame | 제8541.90호 | 미상 | Glass Cover | 제7007.19호 | 미상 | Back Sheet | 제3921.90호 | KR* | Eva | 제3921.90호 | KR* | J-box | 제8536.90호 | KR* | Ribbon | 제7409.31호 | KR* | 기타 | 제39류, 제71류 | KR* | <b>원가 정보</b><br> <p>EXW 250,00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입산 재료: 113,000 (45%)</li> <li>직접노무비·직접경비·제조간접비: 74,000 (30%)</li> <li>판관비 및 이윤: 36,000 (14%)</li> <li>국내산 재료: 27,000 (11%)</li> </ul> |
| 원재료명   | HS Code                             | 원산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Solar Cell   | 제8541.42호                           | 중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Frame  | 제8541.90호                           | 미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Glass Cover  | 제7007.19호                           | 미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ack Sheet   | 제3921.90호                           | KR*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va  | 제3921.90호                           | KR*               |     |            |           |    |       |           |    |             |           |    |            |           |     |     |           |     |       |           |     |        |           |     |    |            |     |  |
| J-box  | 제8536.90호                           | KR*               |     |            |           |    |       |           |    |             |           |    |            |           |     |     |           |     |       |           |     |        |           |     |    |            |     |  |
| Ribbon   | 제7409.31호                           | KR*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 제39류, 제71류                          | KR*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제조공정</b>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재료 입고 → 리본 용접 → Lay up 공정 → Lamination 공정 → 프레임 부착 → J-box 부착 → 검사 → 출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CTSH 충족 여부</b>  | <b>부가가치기준 충족 여부</b>                 | <b>단순가공 충족 여부</b>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충족</b>  | <b>불충족</b>                          | <b>충족</b>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유의사항</b>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요 원재료인 태양광 셀, 프레임 등이 제조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남에 따라 해당 물품을 수입산으로 사용할 경우 원산지판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li> </ul>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① 물품 정보

□ 기본 정보

- 태양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핵심 장치로 여러 개의 태양광 셀로 구성된 일종의 판 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며, 태양 빛을 흡수하여 직류 에너지를 생성

□ 조달청 물품분류

[표 3-8] 태양광발전모듈 조달청 물품분류번호

| 물품분류번호 |    |    |    |    | 품명               |
|--------|----|----|----|----|------------------|
| 26     |    |    |    |    | 회전기기 및 경전기       |
| 26     | 11 |    |    |    | 전지, 발전기 및 동력전달장치 |
| 26     | 11 | 16 |    |    | 발전기류             |
| 26     | 11 | 16 | 92 |    | 태양광발전모듈          |
| 26     | 11 | 16 | 92 | 01 | 태양광발전모듈          |

□ HS Code

- 제8541호 해설에서 “이 그룹에는 가시광선, 적외선, 자외선의 작용이 내부 광전효과에 의해 저항을 변경하거나 기전력(起電力)을 발생하는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를 포함한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의 형태로 광전도 셀, 광전지를 명시하고 있고 “이 호는 또한 모듈(modules)에 조립되었거나 패널(panels)로 구성되었는지에 상관없이 태양전지를 포함한다.”라고 해설함에 따라 태양광 셀은 제8541.42호에, 셀을 모아서 만든 태양광 모듈 및 어레이 등은 제8541.43호에 분류됨<sup>2)</sup>

[표 3-9] 제8541호 품목분류

| 품목번호 |    |    |    | 호의 용어  |
|------|----|----|----|--|
| 8541 |    |    |    | 반도체 디바이스(예: 다이오드·트랜지스터·반도체 기반 트랜스듀서),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에 조립되었거나 패널로 구성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한다), 발광다이오드[(엘이디), 다른 발광다이오드와 결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한다],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 |
|      |    |    |    | ⋮  |
|      | 42 | 00 | 00 | 광전지(모듈에 조립되었거나 패널로 구성된 것은 제외한다)  |
|      | 43 | 00 | 00 | 광전지(모듈에 조립되었거나 패널로 구성된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  |

2) 2022년 1월 전까지 태양광 셀과 태양광 모듈 모두 제8541.40호에 분류되었으나 HS 7차 개정으로 현재 태양광 셀은 제8541.42호, 태양광모듈은 제8541.43호에 분류되어 역외산 태양광 셀로 태양광 모듈을 생산하는 경우에도 CTSH 기준 충족

## ② BOM, 원가 정보 및 제조공정

### □ BOM

o Solar Cell, Frame, Glass Cover, Back sheet, EVA, J-box 등으로 구성

[표 3-10] 태양광발전모듈 BOM

| 원재료명        | HS Code    | 원산지 | 가격     | 합계      |
|-------------|------------|-----|--------|---------|
| Solar Cell  | 제8541.42호  | 중국  | 85,000 | 140,000 |
| Frame       | 제8541.90호  | 미상  | 13,000 |         |
| Glass Cover | 제7007.19호  | 미상  | 15,000 |         |
| Back Sheet  | 제3921.90호  | KR* | 6,500  |         |
| Eva         | 제3921.90호  | KR* | 8,000  |         |
| J-box       | 제8536.90호  | KR* | 5,000  |         |
| Ribbon      | 제7409.31호  | KR* | 3,000  |         |
| 기타          | 제39류, 제71류 | KR* | 4,500  |         |

\* 원산지증빙자료(국내산원재료확인서 혹은 국내산원산지증명서) 제출

### □ 원가 구성

[표 3-11] 태양광발전모듈 원가 정보

| 총원가       |           |           |          |           |              | +      | 이윤 | =       | 공장도<br>가격 |
|-----------|-----------|-----------|----------|-----------|--------------|--------|----|---------|-----------|
| 제조원가      |           |           |          |           | 판매비 및<br>관리비 |        |    |         |           |
| 직접원가      |           |           |          | 제조<br>간접비 |              |        |    |         |           |
| 직접재료비     |           | 직접<br>노무비 | 직접<br>경비 |           |              |        |    |         |           |
| 국내산<br>재료 | 수입산<br>재료 |           |          |           |              |        |    |         |           |
| 27,000    | 113,000   | 74,000    |          | 12,000    |              | 24,000 |    | 250,000 |           |

### □ 제조공정

o 재료 입고 → 리본 용접 → Lay up 공정 → Lamination 공정 → 프레임 부착 → J-box 부착 → 검사 → 출하

### ③ 원산지판정

- **CTSH 충족 여부:** 6단위 기준 완제품의 HS Code(제8541.43호)와 수입산 재료의 HS Code가 모두 상이하므로 CTSH 조건 충족

[표 3-12] 태양광발전모듈 CTSH 충족 여부

| 물품명     | HS Code   | 원재료명        | HS Code   |
|---------|-----------|-------------|-----------|
| 태양광발전모듈 | 제8541.43호 | Solar Cell  | 제8541.42호 |
|         |           | Frame       | 제8541.90호 |
|         |           | Glass Cover | 제7007.19호 |

- **부가가치기준 충족 여부:** 47.2%로 부가가치기준 51% 기준 불충족

[표 3-13] 태양광발전모듈 부가가치기준 충족 여부

| 물품명       | 공장도 가격  | 관관비 및 이윤 | 제조원가    | 수입산 재료 가격 |
|-----------|---|----------|---------|-----------|
| 태양광발전모듈   | 250,000   | 36,000   | 214,000 | 113,000   |
| 역내부가가치 비율 | $\frac{214,000 - 113,000}{214,000} \times 100 = 47.2\%$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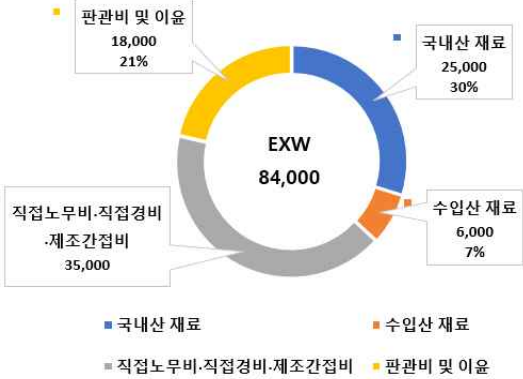
- **단순공정 충족 여부:** Lay up 공정, Lamination 공정 등 태양광발전모듈 생산을 위해 전문적으로 고안된 생산설비 및 공정을 구축하여 생산이 이루어지므로 실질적인 변형을 일으키는 충분한 공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 **유의사항:** 주요 원재료인 태양광 셀, 프레임 등이 제조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남에 따라 해당 물품을 수입산으로 사용할 경우 원산지판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④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표 3-14] 태양광발전모듈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 구분   | 협정   | 원산지결정기준  |
|------|--|--|
| 유럽   | EFTA   | 가.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또는<br>나.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
|      | 영국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또는<br>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5%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 EU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또는<br>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5%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튀르키예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또는<br>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5%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이스라엘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또는<br>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60%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아시아  | 중국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계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 이상일 것  |
|      | 인도   | 1. 수출국에서 완전하게 생산된 경우, 또는<br>2. HS 6단위 이상의 세번변경이 발생하고, 역내부가가치 비율이 35% 이상이 되는 경우   |
|      | 아세안  | 가. 수출국에서 완전하게 생산된 경우, 또는<br>나. HS 4단위 이상의 세번변경이 발생하였거나, 역내부가가치 비율이 40% 이상이 되는 경우   |
|      | 베트남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계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이상일 것  |
|      | 캄보디아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이상일 것  |
|      | 필리핀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이상일 것  |
|      | 싱가포르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인도네시아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계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이상일 것  |
|      | 호주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또는<br>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뉴질랜드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계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이상일 것 |  |
| RCEP | RCEP   | 6단위 세번변경기준(소호 제8541.42호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이상일 것   |
| 아메리카 | 캐나다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미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br>1. 가. 조립된 반도체 디바이스, 집적회로 또는 초소형 조립회로 : 제8541호부터 제8542호까지의 장착되지 아니한 칩, 웨이퍼, 디스크 또는 다른 소호의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br>나. 기타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br>2. 집적법의 경우 30%, 공제법의 경우 3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 중미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또는<br>2. 집적법으로 35%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 콜롬비아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또는<br>2. 집적법으로 35%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 페루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또는<br>2. 집적법으로 35%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 칠레   | 다른 6단위 세번으로부터 제8541.10호 내지 제8541.60호의 변경 및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 사용시 45% 이상, 집적법 사용시 30% 이상인 경우  |

### 3. 의류(남성용 윈드재킷)

|   | <b>물품명</b><br>의류(남성용 윈드재킷)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조달청<br/>물품분류번호</b><br>5310180201<br>* 용도/성별 등에 따라 상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HS Code</b><br>제6201.40호<br>* 편물, 직물 여부/성별 등에 따라 상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BOM</b>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table border="1"> <thead> <tr> <th>원재료명</th> <th>HS Code</th> <th>원산지</th> </tr> </thead> <tbody> <tr> <td>겉감(나일론)</td> <td>제5407.42호</td> <td>KR*</td> </tr> <tr> <td>안감</td> <td>제5407.69호</td> <td>미상</td> </tr> <tr> <td>재봉사</td> <td>제5508.10호</td> <td>미상</td> </tr> <tr> <td>고무밴드</td> <td>제4016.99호</td> <td>미상</td> </tr> <tr> <td>지퍼, 라벨, 포장재<br/>등 부자재</td> <td>제39류,<br/>제83류</td> <td>미상</td> </tr> </tbody> </table> <p>* 원산지 및 임가공 증빙자료 제출</p> | 원재료명  | HS Code           | 원산지 | 겉감(나일론) | 제5407.42호 | KR* | 안감 | 제5407.69호 | 미상 | 재봉사 | 제5508.10호 | 미상 | 고무밴드 | 제4016.99호 | 미상 | 지퍼, 라벨, 포장재<br>등 부자재 | 제39류,<br>제83류 | 미상 | <b>원가 정보</b><br> <table border="1"> <caption>EXW 원가 구성</caption> <thead> <tr> <th>구분</th> <th>금액</th> <th>비율</th> </tr> </thead> <tbody> <tr> <td>국내산 재료</td> <td>25,000</td> <td>30%</td> </tr> <tr> <td>수입산 재료</td> <td>6,000</td> <td>7%</td> </tr> <tr> <td>직접노무비·직접경비·제조간접비</td> <td>35,000</td> <td></td> </tr> <tr> <td>관관비 및 이윤</td> <td>18,000</td> <td>21%</td> </tr> <tr> <td><b>EXW 총액</b></td> <td><b>84,000</b></td> <td></td> </tr> </tbody> </table> | 구분 | 금액 | 비율 | 국내산 재료 | 25,000 | 30% | 수입산 재료 | 6,000 | 7% | 직접노무비·직접경비·제조간접비 | 35,000 |  | 관관비 및 이윤 | 18,000 | 21% | <b>EXW 총액</b> | <b>84,000</b> |  |
| 원재료명   | HS Code   | 원산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겉감(나일론)  | 제5407.42호   | KR*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안감   | 제5407.69호   | 미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재봉사  | 제5508.10호   | 미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고무밴드   | 제4016.99호   | 미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퍼, 라벨, 포장재<br>등 부자재   | 제39류,<br>제83류   | 미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분   | 금액  | 비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내산 재료   | 25,000  | 3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입산 재료   | 6,000   | 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직접노무비·직접경비·제조간접비   | 35,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관비 및 이윤   | 18,000  | 2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EXW 총액</b>  | <b>84,000</b>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제조과정</b>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품 디자인 → 원재료 공급 → 원단 재단(국내 업체 외주) → 봉제(국내 업체 외주) → 부자재 부착(국내 업체 외주) → 검수 및 포장(국내 업체 외주) → 출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CTSH 충족 여부</b>  | <b>부가가치기준 충족 여부</b>                                     | <b>단순가공 충족 여부</b>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충족</b>  | <b>충족</b>   | <b>충족</b>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유의사항</b>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조시설 없이 국내 제3자에게 임가공을 의뢰하여 물품을 생산하는 경우 임가공계약서 및 제조업체(수탁업체)의 공장등록증을 제출해야 하며,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탁자가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 제작 등)할 것</li> <li>○ 모든 주재료를 위탁자의 계산과 책임으로 구입하여 제조업체에게 제공할 것</li> <li>○ 제조업체로 하여금 제공받은 원재료를 제품으로 생산하도록 할 것</li> <li>○ 제조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인수하여 위탁자 책임으로 직접 판매할 것</li> </ul> </li> </ul>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① 물품 정보

□ 기본 정보

- 방한, 방풍을 위해 착용하는 비편물제 상반신용 의류로서 겉감이 나일론으로 구성된 남성용 윈드재킷

□ 조달청 물품분류

[표 3-15] 의류(남성용 윈드재킷) 조달청 물품분류번호

| 물품분류번호 |    |     |  | 품명                                  |
|--------|----|-----|--|-------------------------------------|
| 53     |    |     |  | 의류, 가방 및 개인관리용품                     |
| 53     | 10 |     |  | 의류                                  |
| 53     | 10 | ... |  | 물품의 용도 및 착용자의 성별 등에 따라 여러 하위 번호로 분류 |

□ HS Code

- 제62류 주에서 “이 류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워딩(wadding)은 제외한다]로서 제품으로 된 것에 적용하며,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의 제품(제6212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호 해설에서 “이 호의 물품은 남성용이나 소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기후에 대비한 보호용으로 다른 의류 위에 입는다는 점이 특징이다.” 라고 설명한 것을 참고하여 방한, 방풍을 위해 인조섬유로 구성된 남성용 비편물제 윈드재킷은 제6201.40호로 분류
- (참고)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인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인지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가 해당하는 호에 분류

[표 3-16] 제6201호 품목분류

| 품목번호 |    |  |  | 호의 용어   |
|------|----|--|--|---|
| 6201 |    |  |  | 남성용이나 소년용 오버코트(overcoat) · 카코트(car-coat) · 케이프(cape) · 클록(cloak) · 아노락(anorak)(스키재킷을 포함한다) · 윈드치터(wind-cheater) · 윈드재킷(wind-jacket)과 이와 유사한 의류(제6203호의 것은 제외한다) |
|      | 20 |  |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
|      |    |  |  | ⋮   |
|      | 40 |  |  | 인조섬유로 만든 것  |
|      |    |  |  | ⋮   |

## ② BOM, 원가 정보 및 제조공정

### □ BOM

- 겹감(나일론), 안감, 재봉사, 고무밴드, 지퍼, 라벨 등으로 구성

[표 3-17] 의류(남성용 윈드재킷) BOM

| 원재료명                 | HS Code    | 원산지 | 가격     | 합계     |
|----------------------|------------|-----|--------|--------|
| 겹감(나일론)              | 제5407.42호  | KR* | 25,000 | 31,000 |
| 안감                   | 제5407.69호  | 미상  | 4,000  |        |
| 재봉사                  | 제5508.10호  | 미상  | 200    |        |
| 고무밴드                 | 제4016.99호  | 미상  | 400    |        |
| 지퍼, 라벨, 포장재 등<br>부자재 | 제39류, 제83류 | 미상  | 1,400  |        |

\* 원산지증빙자료(국내산원재료확인서 혹은 국내산원산지증명서) 및 임가공 증빙서류 제출

### □ 원가 구성

[표 3-18] 의류(남성용 윈드재킷)원가 정보

| 총원가       |           |           |          |           | 판매비 및<br>관리비 | +     | 이윤     | =      | 공장도<br>가격 |
|-----------|-----------|-----------|----------|-----------|--------------|-------|--------|--------|-----------|
| 제조원가      |           |           |          | 제조<br>간접비 |              |       |        |        |           |
| 직접원가      |           |           | 직접<br>경비 |           |              |       |        |        |           |
| 직접재료비     |           | 직접<br>노무비 |          | 직접<br>경비  | 제조<br>간접비    | 3,000 | 15,000 | 84,000 |           |
| 국내산<br>재료 | 수입산<br>재료 |           |          |           |              |       |        |        |           |
| 25,000    | 6,000     | 35,000    |          | 3,000     |              |       |        |        |           |

### □ 제조공정

- 제품 디자인 → 원재료 공급 → 원단 재단(국내 업체 외주) → 봉제(국내 업체 외주) → 부자재 부착(국내 업체 외주) → 검수 및 포장(국내 업체 외주) → 출고



③ 원산지판정

- **CTSH 충족 여부:** 6단위 기준 완제품의 HS Code(제6201.40호)와 수입산 재료의 HS Code가 모두 상이하므로 CTSH 조건 충족

[표 3-19] 의류(남성용 윈드재킷) CTSH 충족 여부

| 물품명      | HS Code   | 원재료명                 | HS Code    |
|----------|-----------|----------------------|------------|
| 남성용 윈드재킷 | 제6201.40호 | 안감                   | 제5407.69호  |
|          |           | 재봉사                  | 제5508.10호  |
|          |           | 고무밴드                 | 제4016.99호  |
|          |           | 지퍼, 라벨, 포장재 등<br>부자재 | 제39류, 제83류 |

- **부가가치기준 충족 여부:** 91%로 부가가치기준 51% 및 85% 기준 모두 충족

[표 3-20] 의류(남성용 윈드재킷) 부가가치기준 충족 여부

| 물품명       | 공장도 가격  | 관관비 및 이윤 | 제조원가   | 수입산 재료 가격 |
|-----------|---|----------|--------|-----------|
| 남성용 윈드재킷  | 84,000  | 18,000   | 66,000 | 6,000     |
| 역내부가가치 비율 | $\frac{66,000 - 6,000}{66,000} \times 100 = 91\%$ |          |        |           |

- **단순공정 충족 여부:** 주요 원재료인 걸감을 국내산 나일론 원단으로 사용하였으며 이에 대한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였고 재단, 봉제, 부자재 부착 등의 공정을 국내에서 수행하여 소비자가 직접 착용 가능한 의류 형태로 제작하였으므로 단순한 가공 활동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유의사항:** 제조시설 없이 국내 제3자에게 임가공을 의뢰하여 물품을 생산하는 경우 임가공계약서 및 제조업체(수탁업체)의 공장등록증을 제출해야 하며,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위탁자가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 제작 등)할 것
  - 모든 주재료를 위탁자의 계산과 책임으로 구입하여 제조업체에게 제공할 것
  - 제조업체로 하여금 제공받은 원재료로 제품을 생산하도록 할 것
  - 제조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인수하여 위탁자 책임으로 직접 판매할 것

#### ④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표 3-21] 의류(남성용 윈드재킷)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 구분   | 협정   | 원산지결정기준  |
|------|--|--|
| 유럽   | EFTA   | 다른 류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생산품의 부분품이 당사국에서 재단과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
|      | 영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br>1. 제조공정(절단을 포함한다)을 수반한 직조공정을 거친 것<br>※ 제11부의 주석 6과 주석 7 참조   |
|      | EU   | 2. 제조공정(절단을 포함한다)을 수반한 자수공정을 거친 것. 다만, 사용된 자수되지 않은 비원산지 직물의 가격이 그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br>※ 제11부의 주석 7 참조  |
|      | 튀르키예   | 3. 제조공정(절단을 포함한다)을 수반한 도포공정을 거친 것. 다만, 사용된 도포되지 않은 비원산지 직물의 가격이 그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br>※ 제11부의 주석 7 참조  |
|      |  | 4. 날염작업과 이에 수반하는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정련, 표백, 머어서라이징, 열처리, 기모, 캘린더링, 방축가공, 영구마감처리, 데커타이징, 침투, 보수 및 벌링과 같은 것을 말한다)을 한 후 완성공정을 거쳐 생산된 것. 다만, 날염되지 아니한 비원산지 직물의 가격이 그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47.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br>※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인 경우 제11부의 주석 6 참조<br>※ 제11부의 주석 7 참조 |
| 이스라엘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그 생산품은 한 쪽 또는 양 당사국 내에서 재단 및 봉제가 이루어지거나 달리 결합되어야 함 |  |
| 아시아  | 중국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또는<br>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 인도   | 비원산지 원사로부터 생산된 것   |
|      | 아세안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br>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 베트남  |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이상일 것  |
|      | 캄보디아   |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이상일 것  |
|      | 필리핀  |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이상일 것  |
|      | 싱가포르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에서 재단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에 한정한다.   |
|      | 인도네시아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호주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뉴질랜드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RCEP | RCEP | 2단위 세번변경기준   |
|------|------|--|
| 아메리카 | 캐나다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계약당사국에서 재단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에 한정한다.   |
|      | 미국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3.33호부터 제5403.39호까지, 제5403.42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제5801호부터 제5802호까지 및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br>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한정한다.<br>1. 계약당사국에서 재단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br>2. 보이는 안감이 제62류의 주석 1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것 |
|      | 중미   | 1.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br>2. 엘살바도르: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3호부터 제5516호까지, 제5802호, 제5804호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콜롬비아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페루   |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
|      | 칠레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류,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제5801호부터 제5802호까지 및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계약당사국에서 재단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에 한정한다.   |



① 물품 정보

□ 기본 정보

- 송신·방송·녹음이 되도록 음의 진동을 전류의 변화나 발진으로 변환시키는 기기

□ 조달청 물품분류

[표 3-22] 마이크로폰 조달청 물품분류번호

| 물품분류번호 |    |    |    |    | 품명          |
|--------|----|----|----|----|-------------|
| 52     |    |    |    |    | 가정용품 및 가전제품 |
| 52     | 16 |    |    |    | 가전제품        |
| 52     | 16 | 15 |    |    | 음향기기 및 영상기기 |
| 52     | 16 | 15 | 20 |    | 마이크로폰       |
| 52     | 16 | 15 | 20 | 01 | 마이크로폰       |

□ HS Code

- 제8518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특정 목적을 위하여 설계된 것인지에 상관없이 분리하여 제시하는 모든 종류의 마이크로폰·확성기·헤드폰·이어폰 등을 포함한다[예: 전화기기용의 마이크로폰(microphone), 헤드폰, 이어폰, 무선수신기기용의 확성기].”고 설명하면서 탄소형, 압전형, 가동 코일이나 리본형, 정전용량형, 열선형의 마이크로폰 등의 물품을 나열하고 있고 제8518.10호에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가 특게되어 있으므로 해당 호로 분류

[표 3-23] 제8518호 품목분류

| 품목번호 |    |    |    | 호의 용어  |
|------|----|----|----|--|
| 8518 |    |    |    |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헤드폰과 이어폰(마이크로폰이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가청주파증폭기, 음향증폭세트 |
|      | 10 |    |    |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
|      |    | 10 | 00 | 전기통신용 마이크로폰(지름이 10밀리미터 이하이고, 높이가 3밀리미터 이하이며, 주파수 대역이 300헤르츠부터 3.4킬로헤르츠까지인 것으로 한정한다)  |
|      |    | 90 |    | 기타   |
|      |    |    |    | ⋮  |

## ② BOM, 원가 정보 및 제조공정

### □ BOM

- o PCB 조립품, Body, Ball, 부직포로 구성

[표 3-24] 마이크로폰 BOM

| 원재료명      | HS Code   | 원산지 | 가격    | 합계    |
|-----------|-----------|-----|-------|-------|
| PCB ASS`Y | 제8534.00호 | 중국  | 1,600 | 4,700 |
| Body      | 제7326.90호 | 중국  | 2,200 |       |
| Ball      | 제7326.90호 | 중국  | 700   |       |
| 부직포       | 제5603.12호 | 중국  | 200   |       |

### □ 원가 구성

[표 3-25] 마이크로폰 원가 정보

| 총원가       |           |           |          |           | 판매비 및<br>관리비 | + | 이윤    | = | 공장도<br>가격 |
|-----------|-----------|-----------|----------|-----------|--------------|---|-------|---|-----------|
| 제조원가      |           |           |          | 제조<br>간접비 |              |   |       |   |           |
| 직접원가      |           |           |          |           | 직접<br>경비     |   |       |   |           |
| 직접재료비     |           | 직접<br>노무비 | 직접<br>경비 |           |              |   |       |   |           |
| 국내산<br>재료 | 수입산<br>재료 |           |          |           |              |   |       |   |           |
| 0         | 4,700     |           | 8,000    |           | 1,500        |   | 2,000 |   | 16,200    |

### □ 제조공정

- o 원재료 입고 → PCB ASS`Y 조립 → Body 결속 → Ball 결속 → 검수

③ 원산지판정

- **CTSH 충족 여부:** 6단위 기준 완제품의 HS Code(제8518.10호)와 수입산 재료의 HS Code가 모두 상이하므로 CTSH 조건 충족

[표 3-26] 마이크로폰 CTSH 충족 여부

| 물품명   | HS Code   | 원재료명      | HS Code   |
|-------|-----------|-----------|-----------|
| 마이크로폰 | 제8518.10호 | PCB ASS`Y | 제8534.00호 |
|       |           | Body      | 제7326.90호 |
|       |           | Ball      | 제7326.90호 |
|       |           | 부직포       | 제5603.12호 |

- **부가가치기준 충족 여부:** 63%로 부가가치기준 51% 기준 충족

[표 3-27] 마이크로폰 부가가치기준 충족 여부

| 물품명       | 공장도 가격  | 관관비 및 이윤 | 제조원가   | 수입산 재료 가격 |
|-----------|---|----------|--------|-----------|
| 마이크로폰     | 16,200  | 3,500    | 12,700 | 4,700     |
| 역내부가가치 비율 | $\frac{12,700 - 4,700}{12,700} \times 100 = 63\%$ |          |        |           |

- **단순공정 충족 여부:** 해당 물품의 경우, PCB 조립품, BODY, BALL 등 마이크를 구성하는 주요 부품들을 중국에서 수입하여 국내에서 완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바, PCB 조립이 마이크 완제품 제조를 위한 실질적인 변형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만약 완성된 부품을 수입하여 단순 조립만 하는 경우 단순공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수 있음
- **유의사항:** 완제품 제조를 위해 국내에서 행해지는 공정이 단순 조립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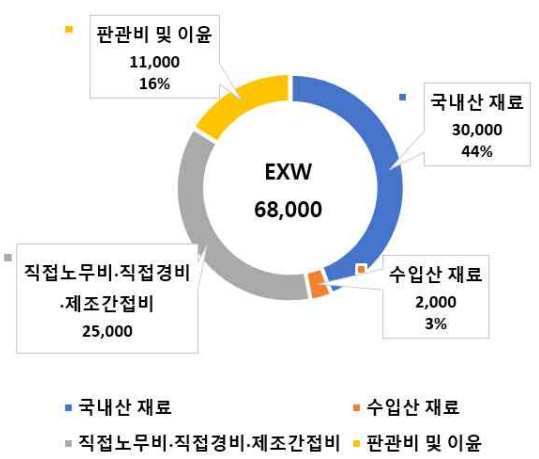
#### ④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표 3-28] 마이크로폰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 구분   | 협정  | 원산지결정기준  |
|------|---|--|
| 유럽   | EFTA  | 가.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또는,<br>나.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
|      | 영국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또는<br>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5%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 EU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또는<br>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5%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튀르키예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또는<br>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5%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이스라엘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또는<br>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60%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아시아  | 중국  | 1. 다른 호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또는<br>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 인도  | 1. 수출국에서 완전하게 생산된 경우, 또는<br>2. HS 6단위 이상의 세번변경이 발생하고, 역내부가가치 비율이 35% 이상이 되는 경우   |
|      | 아세안   | 1. 수출국에서 완전하게 생산된 경우, 또는<br>2. HS 4단위 이상의 세번변경이 발생하였거나, 역내부가가치 비율이 40% 이상이 되는 경우   |
|      | 베트남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계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이상일 것  |
|      | 캄보디아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이상일 것  |
|      | 필리핀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이상일 것  |
|      | 싱가포르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또는<br>2. 다른 호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인도네시아   | 1. 다른 호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또는<br>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 호주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또는<br>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뉴질랜드 | 1. 다른 호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또는<br>2. 집적법으로 30%, 공제법으로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 RCEP | RCEP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이상일 것  |
| 아메리카 | 캐나다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또는<br>2. 제8518호의 다른 호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518호의 다른 호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
|      | 미국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또는<br>2. 제8518.90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중미  | 1. 다른 호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또는<br>2. 공제법으로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 콜롬비아  | 다른 호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페루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또는<br>2. 집적법으로 35%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 칠레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또는<br>2. 다른 호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로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5. 네트워크스위치

|   | <b>물품명</b>            | 네트워크스위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조달청<br/>물품분류번호</b> | 432226120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HS Code</b>        | 제8517.62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BOM</b>   |                       | <b>원가 정보</b>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table border="1"> <thead> <tr> <th>원재료명</th> <th>HS Code</th> <th>원산지</th> </tr> </thead> <tbody> <tr> <td>5 Ports PCB ASS`Y</td> <td>제8517.79호</td> <td>KR*</td> </tr> <tr> <td>Bolt</td> <td>제7318.15호</td> <td>미상</td> </tr> <tr> <td>폴리카보네이트</td> <td>제3907.40호</td> <td>미상</td> </tr> <tr> <td>폴리아미드</td> <td>제3908.10호</td> <td>미상</td> </tr> </tbody> </table> <p>* 원산지증빙자료 제출</p> | 원재료명                  | HS Code           | 원산지 | 5 Ports PCB ASS`Y | 제8517.79호 | KR* | Bolt | 제7318.15호 | 미상 | 폴리카보네이트 | 제3907.40호 | 미상 | 폴리아미드 | 제3908.10호 | 미상 |  <table border="1"> <caption>원가 정보 (EXW 68,000)</caption> <thead> <tr> <th>구분</th> <th>금액</th> <th>비율</th> </tr> </thead> <tbody> <tr> <td>국내산 재료</td> <td>30,000</td> <td>44%</td> </tr> <tr> <td>직접노무비·직접경비·제조간접비</td> <td>25,000</td> <td>37%</td> </tr> <tr> <td>관관비 및 이윤</td> <td>11,000</td> <td>16%</td> </tr> <tr> <td>수입산 재료</td> <td>2,000</td> <td>3%</td> </tr> </tbody> </table> |  | 구분 | 금액 | 비율 | 국내산 재료 | 30,000 | 44% | 직접노무비·직접경비·제조간접비 | 25,000 | 37% | 관관비 및 이윤 | 11,000 | 16% | 수입산 재료 | 2,000 | 3% |
| 원재료명   | HS Code               | 원산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Ports PCB ASS`Y  | 제8517.79호             | KR*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olt   | 제7318.15호             | 미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폴리카보네이트  | 제3907.40호             | 미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폴리아미드  | 제3908.10호             | 미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분   | 금액                    | 비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내산 재료   | 30,000                | 4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직접노무비·직접경비·제조간접비   | 25,000                | 3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관비 및 이윤   | 11,000                | 1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입산 재료   | 2,000                 |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제조공정</b>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원재료 및 반제품 입고 → 외장재 사출 → 조립 → 검수 → 출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CTSH 충족 여부</b>  | <b>부가가치기준 충족 여부</b>   | <b>단순가공 충족 여부</b>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충족</b>  | <b>충족</b>             | <b>충족</b>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유의사항</b>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반제품인 5 Ports PCB ASS`Y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해당 PCB ASS`Y가 그 자체로 완제품의 기능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분품이 분류되는 제8517.79호가 아닌 완제품이 분류되는 제8517.62호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CTSH 기준을 불충족할 가능성 존재</li> </ul>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① 물품 정보

□ 기본 정보

- o 네트워크 기기의 데이터 연결을 중계하고 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기기

□ 조달청 물품분류

[표 3-29] 네트워크스위치 조달청 물품분류번호

| 물품분류번호 |    |    |    |    | 품명                                  |
|--------|----|----|----|----|-------------------------------------|
| 43     |    |    |    |    | 정보기술방송 및 통신기                        |
| 43     | 22 |    |    |    | 데이터보이스 또는 멀티미디어네트워크장비 또는 플랫폼 및 액세서리 |
| 43     | 22 | 26 |    |    | 네트워크서비스장비                           |
| 43     | 22 | 26 | 12 |    | 네트워크스위치                             |
| 43     | 22 | 26 | 12 | 01 | 네트워크스위치                             |

□ HS Code

- o 제8517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유선 네트워크(wired network)에 흐르는 전류나 광파(optical wave)의 변화나 무선네트워크(wireless network)에 의한 전자기파(electro-magnetic wave)로 두 지점간의 대화나 그 밖의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 이들 신호는 아날로그나 디지털이다. 상호 연결되는 네트워크에는 전화·전신·무선전화·무선전신·근거리와 광대역 네트워크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해당 물품은 제8517.62호에 분류

[표 3-30] 제8517호 품목분류

| 품목번호 |    |    |    | 호의 용어  |
|------|----|----|----|--|
| 8517 |    |    |    |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용이나 그 밖의 무선통신망용의 스마트폰과 그 밖의 전화기를 포함한다)와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무선 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제8443호·제8525호·제8527호·제8528호의 송신용·수신용 기기는 제외한다) |
|      |    |    |    | ⋮  |
|      | 6  |    |    |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통신망이나 원거리통신망과 같은 유선·무선 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한다)   |
|      | 61 | 00 | 00 | 기지국  |
|      | 62 |    |    |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변환용·송신용·재생용 기기[교환기와 라우팅(routing)기기를 포함한다]   |
|      |    |    |    | ⋮  |

## ② BOM, 원가 정보 및 제조공정

### □ BOM

- 5 Ports PCB ASS`Y, 외장재 사출을 위한 폴리카보네이트, 폴리아미드 등으로 구성

[표 3-31] 네트워크스위치 BOM

| 원재료명              | HS Code   | 원산지 | 가격     | 합계     |
|-------------------|-----------|-----|--------|--------|
| 5 Ports PCB ASS`Y | 제8517.79호 | KR* | 30,000 | 32,000 |
| Bolt              | 제7318.15호 | 미상  | 100    |        |
| 폴리카보네이트           | 제3907.40호 | 미상  | 1,500  |        |
| 폴리아미드             | 제3908.10호 | 미상  | 400    |        |

\* 원산지증빙자료(국내산원재료확인서 혹은 국내산원산지증명서) 제출

### □ 원가 구성

[표 3-32] 네트워크스위치 원가 정보

| 총원가       |           |           |          |           |              | +      | 이윤 | = | 공장도<br>가격 |
|-----------|-----------|-----------|----------|-----------|--------------|--------|----|---|-----------|
| 제조원가      |           |           |          |           | 판매비 및<br>관리비 |        |    |   |           |
| 직접원가      |           |           |          | 제조<br>간접비 |              |        |    |   |           |
| 직접재료비     |           | 직접<br>노무비 | 직접<br>경비 |           |              |        |    |   |           |
| 국내산<br>재료 | 수입산<br>재료 |           |          |           |              |        |    |   |           |
| 30,000    | 2,000     | 25,000    |          | 1,000     | 10,000       | 68,000 |    |   |           |

### □ 제조공정

- 원재료 및 반제품 입고 → 외장재 사출 → 조립 → 검수 → 출고

### ③ 원산지판정

- **CTSH 충족 여부:** 6단위 기준 완제품의 HS Code(제8517.62호)와 수입산 재료의 HS Code가 모두 상이하므로 CTSH 조건 충족

[표 3-33] 네트워크스위치 CTSH 충족 여부

| 물품명     | HS Code   | 원재료명    | HS Code   |
|---------|-----------|---------|-----------|
| 네트워크스위치 | 제8517.62호 | Bolt    | 제7318.15호 |
|         |           | 폴리카보네이트 | 제3907.40호 |
|         |           | 폴리아미드   | 제3908.10호 |

- **부가가치기준 충족 여부:** 96.5%로 부가가치기준 51% 및 85% 기준 모두 충족

[표 3-34] 네트워크스위치 부가가치기준 충족 여부

| 물품명       | 공장도 가격  | 관관비 및 이윤 | 제조원가   | 수입산 재료 가격 |
|-----------|---|----------|--------|-----------|
| 네트워크스위치   | 68,000  | 11,000   | 57,000 | 2,000     |
| 역내부가가치 비율 | $\frac{57,000 - 2,000}{57,000} \times 100 = 96.5\%$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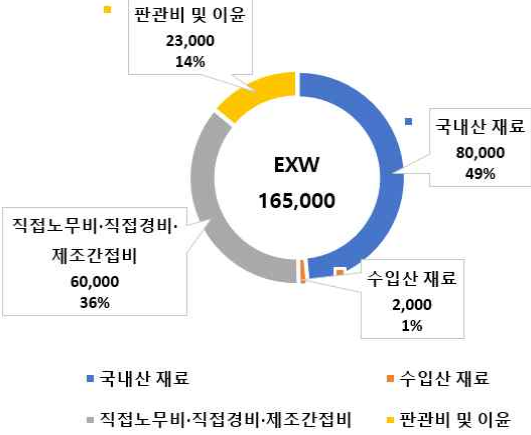
- **단순공정 충족 여부:** 원산지증빙자료를 통해 해당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주요 원재료인 PCB ASS`Y가 국내에서 생산되었음을 입증하였으므로 단순공정 조건 충족
- **유의사항:** 반제품인 5 Ports PCB ASS`Y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해당 PCB ASS`Y가 그 자체로 완제품의 기능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분품이 분류되는 제8517.79호가 아닌 완제품이 분류되는 제8517.62호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CTSH 기준을 불충족할 가능성 존재

④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표 3-35] 네트워크스위치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 구분   | 협정    | 원산지결정기준   |
|------|-------|---|
| 유럽   | EFTA  | 가.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또는<br>나.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
|      | 영국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또는<br>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5%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 EU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또는<br>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5%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튀르키예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또는<br>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5%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이스라엘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또는<br>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60%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아시아  | 중국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또는<br>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 인도    | 가. 수출국에서 완전하게 생산된 경우, 또는<br>나. HS 6단위 이상의 세번변경이 발생하고, 역내부가가치 비율이 35% 이상이 되는 경우  |
|      | 아세안   | 1. 무선전화용·무선전신용의 수신기기를 갖춘 송신기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br>가. 같은 소호의 무선전화용·무선전신용의 송신기기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br>나.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br>2. 기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br>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br>나.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 베트남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이상일 것   |
|      | 캄보디아  | 가. 수신기기를 갖춘 송신기기: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이상일 것<br>나. 그 밖의 상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이상일 것  |
|      | 필리핀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이상일 것   |
|      | 싱가포르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인도네시아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또는<br>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 호주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또는<br>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 뉴질랜드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또는<br>2. 집적법으로 30%, 공제법으로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RCEP | RCEP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이상일 것   |
| 아메리카 | 캐나다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미국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중미    |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또는<br>2. 공제법으로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 콜롬비아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페루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또는<br>2. 집적법으로 35%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 칠레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로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6. 사무용 책상

|   | <b>물품명</b>            | 사무용 책상       |     |       |           |     |      |           |     |        |           |    |       |           |    |  |  |
|--|-----------------------|--------------|-----|-------|-----------|-----|------|-----------|-----|--------|-----------|----|-------|-----------|----|--|--|
|  | <b>조달청<br/>물품분류번호</b> | 5610170301   |     |       |           |     |      |           |     |        |           |    |       |           |    |  |  |
|  | <b>HS Code</b>        | 제9403.30호    |     |       |           |     |      |           |     |        |           |    |       |           |    |  |  |
| <b>BOM</b>   |                       | <b>원가 정보</b> |     |       |           |     |      |           |     |        |           |    |       |           |    |  |  |
| <table border="1"> <thead> <tr> <th>원재료명</th> <th>HS Code</th> <th>원산지</th> </tr> </thead> <tbody> <tr> <td>목제 상판</td> <td>제9403.91호</td> <td>KR*</td> </tr> <tr> <td>철제 판</td> <td>제7209.16호</td> <td>KR*</td> </tr> <tr> <td>스크류 볼트</td> <td>제7318.15호</td> <td>미상</td> </tr> <tr> <td>고무조절발</td> <td>제4017.00호</td> <td>미상</td> </tr> </tbody> </table> <p>* 원산지증빙자료 제출</p> | 원재료명                  | HS Code      | 원산지 | 목제 상판 | 제9403.91호 | KR* | 철제 판 | 제7209.16호 | KR* | 스크류 볼트 | 제7318.15호 | 미상 | 고무조절발 | 제4017.00호 | 미상 |  <p><b>EXW 165,000</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산 재료: 80,000 (49%)</li> <li>■ 수입산 재료: 2,000 (1%)</li> <li>■ 직접노무비·직접경비·제조간접비: 60,000 (36%)</li> <li>■ 관관비 및 이윤: 23,000 (14%)</li> </ul> |  |
| 원재료명   | HS Code               | 원산지          |     |       |           |     |      |           |     |        |           |    |       |           |    |  |  |
| 목제 상판  | 제9403.91호             | KR*          |     |       |           |     |      |           |     |        |           |    |       |           |    |  |  |
| 철제 판   | 제7209.16호             | KR*          |     |       |           |     |      |           |     |        |           |    |       |           |    |  |  |
| 스크류 볼트   | 제7318.15호             | 미상           |     |       |           |     |      |           |     |        |           |    |       |           |    |  |  |
| 고무조절발  | 제4017.00호             | 미상           |     |       |           |     |      |           |     |        |           |    |       |           |    |  |  |
| <b>제조공정</b>  |                       |              |     |       |           |     |      |           |     |        |           |    |       |           |    |  |  |
| 원재료 절단 → 절곡 및 용접 → 조립  |                       |              |     |       |           |     |      |           |     |        |           |    |       |           |    |  |  |
| CTSH 충족 여부   | 부가가치기준 충족 여부          | 단순가공 충족 여부   |     |       |           |     |      |           |     |        |           |    |       |           |    |  |  |
| <b>충족</b>  | <b>충족</b>             | <b>충족</b>    |     |       |           |     |      |           |     |        |           |    |       |           |    |  |  |
| <b>유의사항</b>  |                       |              |     |       |           |     |      |           |     |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원재료인 목제 상판 및 철제 판을 수입하여 투입하는 경우, 부가가치기준을 불충족할 위험성 존재</li> <li>• 국내산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한 판정 기준을 모두 충족하므로 발급 신청자의 편의에 따라 원산지결정기준을 선택하여 신청 가능하며, 부가가치기준 85%로 신청하는 경우 BOM에 HS Code 생략 가능함</li> </ul>   |                       |              |     |       |           |     |      |           |     |        |           |    |       |           |    |  |  |

① 물품 정보

기본 정보

- o 목재 상판에 철제 판을 하부에 부착한 사무용 책상

조달청 물품분류

[표 3-36] 사무용 책상 조달청 물품분류번호

| 물품분류번호 |    |    |    |    | 품명         |
|--------|----|----|----|----|------------|
| 56     |    |    |    |    | 가구 및 관련 제품 |
| 56     | 10 |    |    |    | 편의시설용 가구   |
| 56     | 10 | 17 |    |    | 사무용 가구     |
| 56     | 10 | 17 | 03 |    | 책상         |
| 56     | 10 | 17 | 03 | 01 | 책상         |

HS Code

- o 제94류에는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구들이 분류되는 바, 책상은 그 재질 및 목적에 따라 분류가 달라질 수 있으나, 상판이 목재로 된 사무용 책상의 경우 책상 다리가 철제로 이루어진 복합물이라 할지라도 책상의 본질적인 특성은 사무를 볼 때 인체가 주로 닿는 부분인 상판에 있으므로 사무실용 목재책상으로 보아 제9403.30호에 분류됨<sup>3)</sup>

[표 3-37] 제9403호 품목분류

| 품목번호 |    |    |    | 호의 용어           |
|------|----|----|----|-----------------|
| 9403 |    |    |    | 그 밖의 가구와 그 부분품  |
|      | 1  |    |    | 금속으로 만든 사무실용 가구 |
|      | 20 |    |    | 금속으로 만든 그 밖의 가구 |
|      |    | 10 | 00 | 침대              |
|      |    | 90 | 00 | 기타              |
|      | 30 |    |    | 사무실용 목재가구       |
|      |    | 10 | 00 | 책상              |
|      |    | 90 | 00 | 기타              |
| ⋮    |    |    |    |                 |

3)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3과-1676 품목분류결정사례

## ② BOM, 원가 정보 및 제조공정

### □ BOM

- 목재 상판, 철제 판, 스크류 볼트, 고무조절발로 구성

[표 3-38] 사무용 책상 BOM

| 원재료명   | HS Code   | 원산지 | 가격     | 합계     |
|--------|-----------|-----|--------|--------|
| 목재 상판  | 제9403.91호 | KR* | 25,000 | 82,000 |
| 철제 판   | 제7209.16호 | KR* | 55,000 |        |
| 스크류 볼트 | 제7318.15호 | 미상  | 800    |        |
| 고무조절발  | 제4017.00호 | 미상  | 1,200  |        |

\* 원산지증빙자료(국내산원재료확인서 혹은 국내산원산지증명서) 제출

### □ 원가 구성

[표 3-39] 사무용 책상 원가 정보

| 총원가       |           |           |  |              |           | +        | 이윤 | = | 공장도<br>가격 |
|-----------|-----------|-----------|--|--------------|-----------|----------|----|---|-----------|
| 제조원가      |           |           |  | 판매비 및<br>관리비 | 제조<br>간접비 |          |    |   |           |
| 직접재료비     |           | 직접<br>노무비 |  |              |           | 직접<br>경비 |    |   |           |
| 국내산<br>재료 | 수입산<br>재료 |           |  |              |           |          |    |   |           |
| 80,000    | 2,000     | 60,000    |  | 8,000        | 15,000    | 165,000  |    |   |           |

### □ 제조공정

- 원재료를 도면에 맞춰 절단 → 절곡 및 용접 → 조립



③ 원산지판정

- **CTSH 충족 여부:** 6단위 기준 완제품의 HS Code(제9403.30호)와 수입산 재료의 HS Code가 모두 상이하므로 CTSH 조건 충족

[표 3-40] 사무용 책상 CTSH 충족 여부

| 물품명    | HS Code   | 원재료명   | HS Code   |
|--------|-----------|--------|-----------|
| 사무용 책상 | 제9403.30호 | 스크류 볼트 | 제7318.15호 |
|        |           | 고무조절발  | 제4017.00호 |

- **부가가치기준 충족 여부:** 98.6%로 부가가치기준 51%와 85% 기준 모두 충족

[표 3-41] 사무용 책상 부가가치기준 충족 여부

| 물품명       | 공장도 가격  | 관관비 및 이윤 | 제조원가    | 수입산 재료 가격 |
|-----------|---|----------|---------|-----------|
| 사무용 책상    | 165,000   | 23,000   | 142,000 | 2,000     |
| 역내부가가치 비율 | $\frac{142,000 - 2,000}{142,000} \times 100 = 98.6\%$ |          |         |           |

- **단순공정 충족 여부:** 원산지증빙자료를 통해 해당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주요 원재료인 목재 상판 및 철제 판이 국내에서 생산되었음을 입증하였으므로 단순공정 여부 충족
- **유의사항①:** 주요 원재료인 목재 상판 및 철제 판을 수입하여 투입하는 경우, 부가가치기준을 불충족할 위험성 존재
- **유의사항②:** 국내산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한 판정 기준을 모두 충족하므로 발급 신청자의 편의에 따라 원산지결정기준을 선택하여 신청 가능하며, 부가가치기준 85%로 신청하는 경우 BOM에 HS Code 생략 가능함

#### ④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표 3-42] 사무용 책상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 구분   | 협정                     | 원산지결정기준  |
|------|------------------------|--|
| 유럽   | EFTA                   | 가.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또는<br>나.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
|      | 영국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또는<br>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 EU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또는<br>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튀르키예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또는<br>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 이스라엘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또는<br>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아시아  | 중국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또는<br>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 인도                     | 가. 수출국에서 완전하게 생산된 경우, 또는<br>나. HS 6단위 이상의 세번변경이 발생하고, 역내부가가치 비율이 35% 이상이 되는 경우   |
|      | 아세안                    | 6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 베트남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계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60% 이상일 것  |
|      | 캄보디아                   |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60% 이상일 것  |
|      | 필리핀                    |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60% 이상일 것  |
|      | 싱가포르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인도네시아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또는<br>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 호주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또는<br>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뉴질랜드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RCEP | RCEP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이상일 것  |
| 아메리카 | 캐나다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또는<br>2. 제9403.9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9403.90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
|      | 미국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중미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또는<br>2. 집적법으로 35%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 콜롬비아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또는<br>2. 집적법으로 35%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 페루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또는<br>2.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 칠레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또는<br>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로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7. 남성용 운동화

|    | <b>물품명</b><br>남성용 운동화               |            |     |    |           |    |     |           |    |     |           |    |    |           |    |    |           |    |       |           |    |  |
|---|-------------------------------------|------------|-----|----|-----------|----|-----|-----------|----|-----|-----------|----|----|-----------|----|----|-----------|----|-------|-----------|----|--|
|   | <b>조달청<br/>물품분류번호</b><br>5311190101 |            |     |    |           |    |     |           |    |     |           |    |    |           |    |    |           |    |       |           |    |  |
|   | <b>HS Code</b><br>제6404.19호         |            |     |    |           |    |     |           |    |     |           |    |    |           |    |    |           |    |       |           |    |  |
| <b>BOM</b>  |                                     |            |     |    |           |    |     |           |    |     |           |    |    |           |    |    |           |    |       |           |    |  |
| <table border="1"> <thead> <tr> <th>원재료명</th> <th>HS Code</th> <th>원산지</th> </tr> </thead> <tbody> <tr> <td>갑피</td> <td>제6406.10호</td> <td>미상</td> </tr> <tr> <td>아웃솔</td> <td>제6406.20호</td> <td>미상</td> </tr> <tr> <td>미드솔</td> <td>제6406.90호</td> <td>미상</td> </tr> <tr> <td>인솔</td> <td>제6406.90호</td> <td>미상</td> </tr> <tr> <td>본드</td> <td>제3506.91호</td> <td>미상</td> </tr> <tr> <td>포장 박스</td> <td>제4819.10호</td> <td>미상</td> </tr> </tbody> </table> | 원재료명                                | HS Code    | 원산지 | 갑피 | 제6406.10호 | 미상 | 아웃솔 | 제6406.20호 | 미상 | 미드솔 | 제6406.90호 | 미상 | 인솔 | 제6406.90호 | 미상 | 본드 | 제3506.91호 | 미상 | 포장 박스 | 제4819.10호 | 미상 | <b>원가 정보</b><br> <p>EXW 39,00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입산 재료: 23,300 (60%)</li> <li>직접노무비·직접경비·제조간접비: 12,000 (31%)</li> <li>관관비 및 이윤: 3,700 (9%)</li> <li>국내산 재료: 0 (0%)</li> </ul> |
| 원재료명  | HS Code                             | 원산지        |     |    |           |    |     |           |    |     |           |    |    |           |    |    |           |    |       |           |    |  |
| 갑피  | 제6406.10호                           | 미상         |     |    |           |    |     |           |    |     |           |    |    |           |    |    |           |    |       |           |    |  |
| 아웃솔   | 제6406.20호                           | 미상         |     |    |           |    |     |           |    |     |           |    |    |           |    |    |           |    |       |           |    |  |
| 미드솔   | 제6406.90호                           | 미상         |     |    |           |    |     |           |    |     |           |    |    |           |    |    |           |    |       |           |    |  |
| 인솔  | 제6406.90호                           | 미상         |     |    |           |    |     |           |    |     |           |    |    |           |    |    |           |    |       |           |    |  |
| 본드  | 제3506.91호                           | 미상         |     |    |           |    |     |           |    |     |           |    |    |           |    |    |           |    |       |           |    |  |
| 포장 박스   | 제4819.10호                           | 미상         |     |    |           |    |     |           |    |     |           |    |    |           |    |    |           |    |       |           |    |  |
| <b>제조공정</b>   |                                     |            |     |    |           |    |     |           |    |     |           |    |    |           |    |    |           |    |       |           |    |  |
| 원재료 입고 → 본드 접착 → 포장 → 출고  |                                     |            |     |    |           |    |     |           |    |     |           |    |    |           |    |    |           |    |       |           |    |  |
| CTSH 충족 여부  | 부가가치기준 충족 여부                        | 단순가공 충족 여부 |     |    |           |    |     |           |    |     |           |    |    |           |    |    |           |    |       |           |    |  |
| <b>충족</b>   | <b>불충족</b>                          | <b>불충족</b> |     |    |           |    |     |           |    |     |           |    |    |           |    |    |           |    |       |           |    |  |
| <b>유의사항</b>   |                                     |            |     |    |           |    |     |           |    |     |           |    |    |           |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상으로 기재된 원재료가 한국에서 생산된 물품일 경우 국내산임을 증빙하는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하며, 수입산 부품을 수입하여 단순 접착만 하는 경우 국내산으로 판정할 수 없음</li> </ul>  |                                     |            |     |    |           |    |     |           |    |     |           |    |    |           |    |    |           |    |       |           |    |  |

① 물품 정보

□ 기본 정보

- 바깥 바닥은 고무, 겹피는 방직용 섬유제(폴리에스테르 90%)로 구성된 신발로 평상시나 운동시 활동하기 편하게 신는 운동화

□ 조달청 물품분류

[표 3-43] 남성용 운동화 조달청 물품분류번호

| 물품분류번호 |    |    |    |    | 품명              |
|--------|----|----|----|----|-----------------|
| 53     |    |    |    |    | 의류, 가방 및 개인관리용품 |
| 53     | 11 |    |    |    | 신발류             |
| 53     | 11 | 19 |    |    | 운동화             |
| 53     | 11 | 19 | 01 |    | 남성용 운동화         |
| 53     | 11 | 19 | 01 | 01 | 남성용 운동화         |

□ HS Code

- 제64류에는 각종 신발류, 각반과 이와 유사한 것, 이들의 부분품을 분류하는 바, 제6404호에는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플라스틱·가죽·컴퍼지션레더로 만들고 겹피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를 분류하며, 제64류 주 제4호 가목 및 나목에서 “겹피의 재료는 외부 표면적이 가장 넓은 면의 구성 재료에 따라 결정되고 바깥 바닥의 재료는 접지하는 외부 표면적이 가장 넓은 면의 구성 재료에 따라 결정된다.”고 명시한 것을 참고하여 해당 물품은 제6404.19호에 분류함

[표 3-44] 제6404호 품목분류

| 품목번호 |    |    |    | 호의 용어   |
|------|----|----|----|---|
| 6404 |    |    |    |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플라스틱·가죽·컴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겹피(甲皮)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
|      | 1  |    |    |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
|      | 11 | 00 | 00 | 스포츠용 신발류, 테니스화·농구화·체조화·훈련화나 이와 유사한 것  |
|      | 19 |    |    | 기타  |
|      |    |    |    | ⋮   |

## ② BOM, 원가 정보 및 제조공정

### □ BOM

- 갑피, 아웃솔, 미드솔, 인솔 등으로 구성

[표 3-45] 남성용 운동화 BOM

| 원재료명  | HS Code   | 원산지 | 가격     | 합계     |
|-------|-----------|-----|--------|--------|
| 갑피    | 제6406.10호 | 미상  | 14,000 | 23,300 |
| 아웃솔   | 제6406.20호 | 미상  | 1,500  |        |
| 미드솔   | 제6406.90호 | 미상  | 4,500  |        |
| 인솔    | 제6406.90호 | 미상  | 1,000  |        |
| 본드    | 제3506.91호 | 미상  | 1,800  |        |
| 포장 박스 | 제4819.10호 | 미상  | 500    |        |

### □ 원가 구성

[표 3-46] 남성용 운동화 원가 정보

| 총원가       |           |           |          |           |              | + | 이윤    | = | 공장도<br>가격 |
|-----------|-----------|-----------|----------|-----------|--------------|---|-------|---|-----------|
| 제조원가      |           |           |          |           | 판매비 및<br>관리비 |   |       |   |           |
| 직접원가      |           |           |          | 제조<br>간접비 |              |   |       |   |           |
| 직접재료비     |           | 직접<br>노무비 | 직접<br>경비 |           |              |   |       |   |           |
| 국내산<br>재료 | 수입산<br>재료 |           |          |           |              |   |       |   |           |
| 0         | 23,300    |           | 12,000   |           | 1,000        |   | 2,700 |   | 39,000    |

### □ 제조공정

- 원재료 입고 → 본드 접착 → 포장 → 출고

### ③ 원산지판정

- **CTSH 충족 여부:** 6단위 기준 완제품의 HS Code(제6404.19호)와 수입산 재료의 HS Code가 모두 상이하므로 CTSH 조건 충족

[표 3-47] 남성용 운동화 CTSH 충족 여부

| 물품명     | HS Code   | 원재료명  | HS Code   |
|---------|-----------|-------|-----------|
| 남성용 운동화 | 제6404.19호 | 갑피    | 제6406.10호 |
|         |           | 아웃솔   | 제6406.20호 |
|         |           | 미드솔   | 제6406.90호 |
|         |           | 인솔    | 제6406.90호 |
|         |           | 본드    | 제3506.91호 |
|         |           | 포장 박스 | 제4819.10호 |

- **부가가치기준 충족 여부:** 34%로 부가가치기준 51% 기준 불충족

[표 3-48] 남성용 운동화 부가가치기준 충족 여부

| 물품명       | 공장도 가격   | 관관비 및 이윤 | 제조원가   | 수입산 재료 가격 |
|-----------|--|----------|--------|-----------|
| 남성용 운동화   | 39,000   | 3,700    | 35,300 | 23,300    |
| 역내부가가치 비율 | $\frac{35,300 - 23,300}{35,300} \times 100 = 34\%$ |          |        |           |

- **단순공정 충족 여부:** 원산지 미상인 주요 원재료(갑피, 아웃솔, 미드솔, 인솔)를 본드로 접착하는 공정만으로 완제품이 생산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단순한 가공 활동에 해당하여 국내산 판정이 불가능함
- **유의사항:** 미상으로 기재된 원재료가 한국에서 생산된 물품일 경우, 국내산임을 증빙하는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하며, 수입산 부품을 수입하여 단순 접착만 하는 경우 국내산으로 판정할 수 없음

④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표 3-49] 남성용 운동화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 구분   | 협정    | 원산지결정기준   |
|------|-------|---|
| 유럽   | EFTA  |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
|      | 영국    | 1.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6406호의 안창 또는 기타 바닥에 부착된 갑피의 조립품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또는<br>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 EU    |   |
|      | 튀르키예  |   |
|      | 이스라엘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또는<br>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아시아  | 중국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인도    | 가. 수출국에서 완전하게 생산된 경우, 또는<br>나. HS 6단위 이상의 세번변경이 발생하고, 역내부가가치 비율이 35% 이상이 되는 경우  |
|      |       | 가. 수출국에서 완전하게 생산된 경우, 또는<br>나. HS 4단위 이상의 세번변경이 발생하였거나, 역내부가가치 비율이 40% 이상이 되는 경우  |
|      | 베트남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계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이상일 것   |
|      | 캄보디아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이상일 것   |
|      | 필리핀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이상일 것   |
|      | 싱가포르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인도네시아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또는<br>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 호주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뉴질랜드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RCEP | RCEP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이상일 것   |
| 아메리카 | 캐나다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6406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또는<br>2. 제6406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6406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
|      | 미국    | 1. 제6401.10호, 미국 통합관세율표(HTSUS)의 제6401.92.90호·제6401.99.30호·제6401.99.60호·제6401.99.90호·제6401.99.10호·제6402.91.50호·제6402.91.80호·제6402.91.90호·제6402.91.10호·제6402.91.20호·제6402.91.26호·제6402.99.33호·제6402.99.80호·제6402.99.90호·제6402.99.08호·제6402.99.16호·제6402.99.19호·제6404.11.90호·제6404.19.20호에 해당하는 물품 : 제6401호부터 제6405호까지 이외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6406.10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집적법으로 5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br>2. 기타 : 다른 호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중미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6406.10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또는<br>2. 공제법으로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 콜롬비아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6406호의 갑피는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또는<br>2. 공제법으로 6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 페루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6406.10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칠레    | 제6401호부터 제6405호까지 이외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로 45%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① 물품 정보

□ 기본 정보

- 방직용 섬유층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질병의 감염, 매연 등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마스크

□ 조달청 물품분류

[표 3-50] 보건용 마스크 조달청 물품분류번호

| 물품분류번호 |    |    |    |    | 품명          |
|--------|----|----|----|----|-------------|
| 46     |    |    |    |    | 공공안전 및 치안장비 |
| 46     | 18 |    |    |    | 호신 및 보호장비   |
| 46     | 18 | 20 |    |    | 호흡보호장비      |
| 46     | 18 | 20 | 01 |    | 마스크 또는 보조용품 |
| 46     | 18 | 20 | 01 | 03 | 보건용 마스크     |

\*공적판매용인 경우 4618200106에 분류

□ HS Code

- 제6307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먼지·악취 등에 대한 보호용 얼굴 마스크로서 교체 가능한 필터를 갖추지 않았으나 여러 층의 부직포로 구성하고 있는 것(활성탄으로 처리하였거나 합성섬유의 중앙 층이 있는지에 상관없다)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제6307.90-4020호에 보건용 마스크가 특게되어 있음

[표 3-51] 제6307호 품목분류

| 품목번호 |    |    |    | 호의 용어                               |
|------|----|----|----|-------------------------------------|
| 6307 |    |    |    |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 |
|      |    |    |    | ⋮                                   |
|      | 90 |    |    | 기타                                  |
|      |    | 10 |    | 신발류 끈                               |
|      |    | 20 |    | 보자기                                 |
|      |    | 30 |    | 드레스 패턴(dress pattern)               |
|      |    | 40 |    | 안면마스크                               |
|      |    |    | 10 | 수술용 마스크                             |
|      |    |    | 20 | 보건용 마스크                             |
|      |    |    |    | ⋮                                   |

## ② BOM, 원가 정보 및 제조공정

### □ BOM

- 부직포, 코편, 귀끈 등으로 구성

[표 3-52] 보건용 마스크 BOM

| 원재료명    | HS Code   | 원산지 | 가격 | 합계  |
|---------|-----------|-----|----|-----|
| 부직포(내피) | 제5603.12호 | 미상  | 15 | 130 |
| 부직포(외피) | 제5603.11호 | 미상  | 20 |     |
| 부직포(필터) | 제5603.12호 | 미상  | 30 |     |
| 코편      | 제7217.90호 | 미상  | 15 |     |
| 귀끈      | 제5609.00호 | 미상  | 10 |     |
| 포장지     | 제3923.29호 | 미상  | 40 |     |

### □ 원가 구성

[표 3-53] 보건용 마스크 원가 정보

| 총원가       |           |           |          |           |              | +  | 이윤 | =   | 공장도<br>가격 |
|-----------|-----------|-----------|----------|-----------|--------------|----|----|-----|-----------|
| 제조원가      |           |           |          |           | 판매비 및<br>관리비 |    |    |     |           |
| 직접원가      |           |           |          | 제조<br>간접비 |              |    |    |     |           |
| 직접재료비     |           | 직접<br>노무비 | 직접<br>경비 |           |              |    |    |     |           |
| 국내산<br>재료 | 수입산<br>재료 |           |          |           |              |    |    |     |           |
| 0         | 130       |           | 210      | 10        |              | 50 |    | 400 |           |

### □ 제조공정

- 부직포 초음파 용착 → 코편 및 귀끈 용착 → 접기 및 절단 → 검사 → 포장

③ 원산지판정

- **CTSH 충족 여부:** 6단위 기준 완제품의 HS Code(제6307.90호)와 수입산 재료의 HS Code가 모두 상이하므로 CTSH 조건 충족

[표 3-54] 보건용 마스크 CTSH 충족 여부

| 물품명     | HS Code   | 원재료명    | HS Code   |
|---------|-----------|---------|-----------|
| 보건용 마스크 | 제6307.90호 | 부직포(내피) | 제5603.12호 |
|         |           | 부직포(외피) | 제5603.11호 |
|         |           | 부직포(필터) | 제5603.12호 |
|         |           | 코편      | 제7217.90호 |
|         |           | 귀끈      | 제5609.00호 |
|         |           | 포장지     | 제3923.29호 |

- **부가가치기준 충족 여부:** 61.8%로 부가가치기준 51% 기준 충족

[표 3-55] 보건용 마스크 부가가치기준 충족 여부

| 물품명       | 공장도 가격                                      | 관관비 및 이윤 | 제조원가 | 수입산 재료 가격 |
|-----------|---|----------|------|-----------|
| 보건용 마스크   | 400   | 60       | 340  | 130       |
| 역내부가가치 비율 | $\frac{340 - 130}{340} \times 100 = 61.8\%$ |          |      |           |

- **단순공정 충족 여부:** 초음파 용착, 절단 등의 기계공정을 통해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는 바, 단순공정에 해당하지 않음
- **유의사항:** 운송(수송)을 위한 포장·용기의 경우 최종제품의 원산지결정 시 고려하지 않지만 소매용 포장·용기의 경우 원산지별로 구분하여 계상



④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표 3-56] 보건용 마스크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 구분   | 협정    | 원산지결정기준   |
|------|-------|---|
| 유럽   | EFTA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
|      | 영국    |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 EU    |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 튀르키예  |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 이스라엘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그 생산품은 한 쪽 또는 양 당사국 내에서 재단 및 봉제가 이루어지거나 달리 결합되어야 함  |
| 아시아  | 중국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또는<br>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 인도    | 비원산지 원사로부터 생산된 것  |
|      | 아세안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007호, 제5111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8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9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12호부터 제5516호까지, 제5801호부터 제5802호까지 및 제60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원산지물품인 것으로 한정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br>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 베트남   |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이상일 것   |
|      | 캄보디아  |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이상일 것   |
|      | 필리핀   |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이상일 것   |
|      | 싱가포르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007호, 제5111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8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9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12호부터 제5516호까지, 제5801호부터 제5802호까지, 제5903호, 제5906호부터 제5907호까지 및 제60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에서 재단[또는 편성(knit to shape)]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에 한정한다.  |
|      | 인도네시아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호주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에서 식물로부터 마무리 공정까지 모두 수행된 경우에 한정한다.   |
|      | 뉴질랜드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또는<br>2. 공제법으로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RCEP | RCEP  | 2단위 세번변경기준  |

|      |      |  |
|------|------|--|
| 아메리카 | 캐나다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에서 재단[또는 편성(knit to shape)]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에 한정한다.  |
|      | 미국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3.33호부터 제5403.39호까지, 제5403.42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제5801호부터 제5802호까지 및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에서 재단[또는 편성(knit to shape)]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에 한정한다. |
|      | 중미   | 1.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br>2. 엘살바도르: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3호부터 제5516호까지, 제5802호, 제5804호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콜롬비아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페루   |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기 위한 편성)과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
|      | 칠레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류부터 제55류까지, 제5801호부터 제5802호까지 및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에서 재단[또는 편성(knit to shape)]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에 한정한다.   |

### 9. 금속제창(알루미늄)

|   | <b>물품명</b><br>금속제창(알루미늄)            |                   |         |     |            |           |    |        |           |     |                  |           |    |          |           |     |            |               |    |
|--|-------------------------------------|-------------------|---------|-----|------------|-----------|----|--------|-----------|-----|------------------|-----------|----|----------|-----------|-----|------------|---------------|----|
|  | <b>조달청<br/>물품분류번호</b><br>3017169801 |                   |         |     |            |           |    |        |           |     |                  |           |    |          |           |     |            |               |    |
|  | <b>HS Code</b><br>제7610.10호         |                   |         |     |            |           |    |        |           |     |                  |           |    |          |           |     |            |               |    |
| <b>BOM</b>   |                                     |                   |         |     |            |           |    |        |           |     |                  |           |    |          |           |     |            |               |    |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원재료명</th> <th>HS Code</th> <th>원산지</th> </tr> </thead> <tbody> <tr> <td>알루미늄합금제 형재</td> <td>제7604.29호</td> <td>미상</td> </tr> <tr> <td>단열바</td> <td>제3925.20호</td> <td>미상</td> </tr> <tr> <td>크레센트</td> <td>제8301.50호</td> <td>미상</td> </tr> <tr> <td>가스켓</td> <td>제3926.90호</td> <td>미상</td> </tr> <tr> <td>롤러</td> <td>제8302.41호</td> <td>미상</td> </tr> </tbody> </table>  |                                     | 원재료명              | HS Code | 원산지 | 알루미늄합금제 형재 | 제7604.29호 | 미상 | 단열바    | 제3925.20호 | 미상  | 크레센트             | 제8301.50호 | 미상 | 가스켓      | 제3926.90호 | 미상  | 롤러         | 제8302.41호     | 미상 |
| 원재료명   | HS Code                             | 원산지               |         |     |            |           |    |        |           |     |                  |           |    |          |           |     |            |               |    |
| 알루미늄합금제 형재   | 제7604.29호                           | 미상                |         |     |            |           |    |        |           |     |                  |           |    |          |           |     |            |               |    |
| 단열바  | 제3925.20호                           | 미상                |         |     |            |           |    |        |           |     |                  |           |    |          |           |     |            |               |    |
| 크레센트   | 제8301.50호                           | 미상                |         |     |            |           |    |        |           |     |                  |           |    |          |           |     |            |               |    |
| 가스켓  | 제3926.90호                           | 미상                |         |     |            |           |    |        |           |     |                  |           |    |          |           |     |            |               |    |
| 롤러   | 제8302.41호                           | 미상                |         |     |            |           |    |        |           |     |                  |           |    |          |           |     |            |               |    |
| <b>원가 정보</b>   |                                     |                   |         |     |            |           |    |        |           |     |                  |           |    |          |           |     |            |               |    |
|  <table border="1" style="margin-top: 10px;"> <thead> <tr> <th>구분</th> <th>금액</th> <th>비율</th> </tr> </thead> <tbody> <tr> <td>국내산 재료</td> <td>0</td> <td>0%</td> </tr> <tr> <td>수입산 재료</td> <td>22,000</td> <td>49%</td> </tr> <tr> <td>직접노무비·직접경비·제조간접비</td> <td>16,000</td> <td></td> </tr> <tr> <td>관관비 및 이윤</td> <td>7,000</td> <td>15%</td> </tr> <tr> <td><b>EXW</b></td> <td><b>45,000</b></td> <td></td> </tr> </tbody> </table> |                                     | 구분                | 금액      | 비율  | 국내산 재료     | 0         | 0% | 수입산 재료 | 22,000    | 49% | 직접노무비·직접경비·제조간접비 | 16,000    |    | 관관비 및 이윤 | 7,000     | 15% | <b>EXW</b> | <b>45,000</b> |    |
| 구분   | 금액                                  | 비율                |         |     |            |           |    |        |           |     |                  |           |    |          |           |     |            |               |    |
| 국내산 재료   | 0                                   | 0%                |         |     |            |           |    |        |           |     |                  |           |    |          |           |     |            |               |    |
| 수입산 재료   | 22,000                              | 49%               |         |     |            |           |    |        |           |     |                  |           |    |          |           |     |            |               |    |
| 직접노무비·직접경비·제조간접비   | 16,000                              |                   |         |     |            |           |    |        |           |     |                  |           |    |          |           |     |            |               |    |
| 관관비 및 이윤   | 7,000                               | 15%               |         |     |            |           |    |        |           |     |                  |           |    |          |           |     |            |               |    |
| <b>EXW</b>   | <b>45,000</b>                       |                   |         |     |            |           |    |        |           |     |                  |           |    |          |           |     |            |               |    |
| <b>제조공정</b>  |                                     |                   |         |     |            |           |    |        |           |     |                  |           |    |          |           |     |            |               |    |
| 형재 가공 → 단열바 삽입 및 부착 → 부자재 조립 → 출하  |                                     |                   |         |     |            |           |    |        |           |     |                  |           |    |          |           |     |            |               |    |
| <b>CTSH 충족 여부</b>  | <b>부가가치기준 충족 여부</b>                 | <b>단순가공 충족 여부</b> |         |     |            |           |    |        |           |     |                  |           |    |          |           |     |            |               |    |
| <b>충족</b>  | <b>불충족</b>                          | <b>충족</b>         |         |     |            |           |    |        |           |     |                  |           |    |          |           |     |            |               |    |
| <b>유의사항</b>  |                                     |                   |         |     |            |           |    |        |           |     |                  |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요 원재료인 알루미늄합금제 형재 또는 단열바에 대해 국내산임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수입산을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 존재</li> </ul>  |                                     |                   |         |     |            |           |    |        |           |     |                  |           |    |          |           |     |            |               |    |

① 물품 정보

□ 기본 정보

- 건축물에 사용되는 창틀로서 주요 부분을 알루미늄으로 만들어 벽이나 지붕에 설치하는 것

□ 조달청 물품분류

[표 3-57] 금속제창(알루미늄) 조달청 물품분류번호

| 물품분류번호 |    |    |    |    | 품명      |
|--------|----|----|----|----|---------|
| 30     |    |    |    |    | 건자재     |
| 30     | 17 |    |    |    | 창호 및 유리 |
| 30     | 17 | 16 |    |    | 창문      |
| 30     | 17 | 16 | 98 |    | 금속제창    |
| 30     | 17 | 16 | 98 | 01 | 금속제창    |

□ HS Code

- 제76류 총설에서 “이 류는 알루미늄(aluminium)과 그 합금과 이들의 특정한 제품을 분류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제7610호 해설에서 “알루미늄과 그 합금은 경량성(輕量性) 때문에 철강 대신으로 구조물의 골격·조립식 건축물·선박의 상부 구조물·다리·미단이·전기격자나 라디오용 탑·망원용 탑·문이나 창틀 레일 등 제조에 사용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알루미늄제 문·창과 이들의 틀과 문지방이 특제된 제7610.10호에 분류

[표 3-58] 제7610호 품목분류

| 품목번호 |    |    |     | 호의 용어  |
|------|----|----|-----|--|
| 7610 |    |    |     | 알루미늄으로 만든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과 그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수문·탑·격자주(格子柱)·지붕·지붕틀·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난간·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알루미늄으로 만든 판·봉·프로파일(profile)·관(管)과 이와 유사한 것 |
|      | 10 | 00 | 00  | 문·창과 이들의 틀과 문지방  |
|      | 90 |    |     | 기타   |
|      |    | 10 | 00  | 구조물  |
|      |    | 80 | 00  | 기타   |
|      | 90 | 00 | 부분품 |  |

## ② BOM, 원가 정보 및 제조공정

### □ BOM

- 프레임, 단열바, 크레센트, 가스켓, 롤러로 구성

[표 3-59] 금속제창(알루미늄) BOM

| 원재료명       | HS Code   | 원산지 | 가격     | 합계     |
|------------|-----------|-----|--------|--------|
| 알루미늄합금제 형재 | 제7604.29호 | 미상  | 12,000 | 22,000 |
| 단열바        | 제3925.20호 | 미상  | 7,000  |        |
| 크레센트       | 제8301.50호 | 미상  | 1,500  |        |
| 가스켓        | 제3926.90호 | 미상  | 1,000  |        |
| 롤러         | 제8302.41호 | 미상  | 500    |        |

### □ 원가 구성

[표 3-60] 금속제창(알루미늄) 원가 정보

| 총원가       |           |        |  |              |           | +         | 이윤       | = | 공장도<br>가격 |
|-----------|-----------|--------|--|--------------|-----------|-----------|----------|---|-----------|
| 제조원가      |           |        |  | 판매비 및<br>관리비 | 제조<br>간접비 |           |          |   |           |
| 직접재료비     |           | 직접원가   |  |              |           | 직접<br>노무비 | 직접<br>경비 |   |           |
| 국내산<br>재료 | 수입산<br>재료 |        |  |              |           |           |          |   |           |
| 0         | 22,000    | 16,000 |  | 2,000        | 5,000     | 45,000    |          |   |           |

### □ 제조공정

- 형재 가공 → 단열바 삽입 및 부착 → 부자재 조립 → 출하



③ 원산지판정

- CTSH 충족 여부: 6단위 기준 완제품의 HS Code(제7610.10호)와 수입산 재료의 HS Code가 모두 상이하므로 CTSH 조건 충족

[표 3-61] 금속제창(알루미늄) CTSH 충족 여부

| 물품명        | HS Code   | 원재료명       | HS Code   |
|------------|-----------|------------|-----------|
| 금속제창(알루미늄) | 제7610.10호 | 알루미늄합금제 형재 | 제7604.29호 |
|            |           | 단열바        | 제3925.20호 |
|            |           | 크레센트       | 제8301.50호 |
|            |           | 가스켓        | 제3926.90호 |
|            |           | 롤러         | 제8302.41호 |

- 부가가치기준 충족 여부: 42.1%로 부가가치기준 51% 기준 불충족

[표 3-62] 금속제창(알루미늄) 부가가치기준 충족 여부

| 물품명        | 공장도 가격   | 관관비 및 이윤 | 제조원가   | 수입산 재료 가격 |
|------------|--|----------|--------|-----------|
| 금속제창(알루미늄) | 45,000   | 7,000    | 38,000 | 22,000    |
| 역내부가가치 비율  | $\frac{38,000 - 22,000}{38,000} \times 100 = 42.1\%$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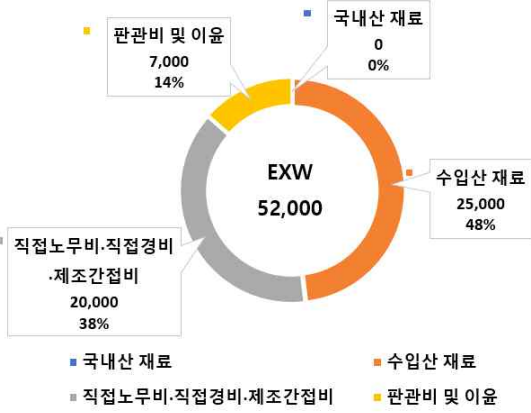
- 단순공정 충족 여부: 규격에 맞게 형재를 가공하고 단열바 및 부자재를 조립하는 등 일반적인 창틀의 형태를 구성하기 위한 공정이 수행되었으므로 단순공정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유의사항: 주요 원재료인 알루미늄합금제 형재 또는 단열바에 대해 국내산임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수입산을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 존재

④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표 3-63] 금속제창(알루미늄)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 구분   | 협정                     | 원산지결정기준  |
|------|------------------------|--|
| 유럽   | EFTA                   | 가.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또는<br>나.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60%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
|      | 영국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EU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튀르키예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이스라엘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또는<br>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은 것 |
| 아시아  | 중국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인도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2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아세안                    | 가. 수출국에서 완전하게 생산된 경우, 또는<br>나. HS 4단위 이상의 세번변경이 발생하였거나, 역내부가가치 비율이 40% 이상이 되는 경우               |
|      | 베트남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계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이상일 것  |
|      | 캄보디아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이상일 것  |
|      | 필리핀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이상일 것  |
|      | 싱가포르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인도네시아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또는<br>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 호주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뉴질랜드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RCEP | RCEP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이상일 것  |
| 아메리카 | 캐나다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미국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중미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콜롬비아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페루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칠레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10. 롤업셰이드(블라인드)

|   | <b>물품명</b><br>롤업셰이드(블라인드)           |                                |     |           |           |    |        |           |    |        |           |    |        |               |    |   |
|--|-------------------------------------|--------------------------------|-----|-----------|-----------|----|--------|-----------|----|--------|-----------|----|--------|---------------|----|---|
|  | <b>조달청<br/>물품분류번호</b><br>5213160201 |                                |     |           |           |    |        |           |    |        |           |    |        |               |    |   |
|  | <b>HS Code</b><br>제6303.92호         |                                |     |           |           |    |        |           |    |        |           |    |        |               |    |   |
| <b>BOM</b>   |                                     |                                |     |           |           |    |        |           |    |        |           |    |        |               |    |   |
| <table border="1"> <thead> <tr> <th>원재료명</th> <th>HS Code</th> <th>원산지</th> </tr> </thead> <tbody> <tr> <td>폴리에스테르 원단</td> <td>제5407.53호</td> <td>미상</td> </tr> <tr> <td>상단 구조물</td> <td>제7610.90호</td> <td>미상</td> </tr> <tr> <td>하단 구조물</td> <td>제7610.90호</td> <td>미상</td> </tr> <tr> <td>캡, 부분품</td> <td>제39류,<br/>제59류</td> <td>미상</td> </tr> </tbody> </table> | 원재료명                                | HS Code                        | 원산지 | 폴리에스테르 원단 | 제5407.53호 | 미상 | 상단 구조물 | 제7610.90호 | 미상 | 하단 구조물 | 제7610.90호 | 미상 | 캡, 부분품 | 제39류,<br>제59류 | 미상 | <b>원가 정보</b><br> |
| 원재료명   | HS Code                             | 원산지                            |     |           |           |    |        |           |    |        |           |    |        |               |    |   |
| 폴리에스테르 원단  | 제5407.53호                           | 미상                             |     |           |           |    |        |           |    |        |           |    |        |               |    |   |
| 상단 구조물   | 제7610.90호                           | 미상                             |     |           |           |    |        |           |    |        |           |    |        |               |    |   |
| 하단 구조물   | 제7610.90호                           | 미상                             |     |           |           |    |        |           |    |        |           |    |        |               |    |   |
| 캡, 부분품   | 제39류,<br>제59류                       | 미상                             |     |           |           |    |        |           |    |        |           |    |        |               |    |   |
| <b>제조공정</b>  |                                     |                                |     |           |           |    |        |           |    |        |           |    |        |               |    |   |
| 원단 재단 → 알루미늄 커팅 → 알루미늄 구조물과 원단 결합 및 조립 → 검사  |                                     |                                |     |           |           |    |        |           |    |        |           |    |        |               |    |   |
| <b>CTSH 충족 여부</b><br><b>충족</b>   | <b>부가가치기준 충족 여부</b><br><b>불충족</b>   | <b>단순가공 충족 여부</b><br><b>충족</b> |     |           |           |    |        |           |    |        |           |    |        |               |    |   |
| <b>유의사항</b>  |                                     |                                |     |           |           |    |        |           |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재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원단의 경우 국내산을 사용하는 것이 부가가치기준 충족에 유리할 수 있음</li> </ul>  |                                     |                                |     |           |           |    |        |           |    |        |           |    |        |               |    |   |

① 물품 정보

□ 기본 정보

- 폴리에스테르 원단으로 만든 차광 및 외부 시야 가림 목적의 물품으로 일반적으로 창문을 덮는 블라인드 형태로서 롤처럼 말아 걸어 올리고 내리는 개폐 방식의 가림막

□ 조달청 물품분류

[표 3-64] 롤업셰이드(블라인드) 조달청 물품분류번호

| 물품분류번호 |    |    |    |    | 품명          |
|--------|----|----|----|----|-------------|
| 52     |    |    |    |    | 가정용품 및 가전제품 |
| 52     | 13 |    |    |    | 커튼 및 차양     |
| 52     | 13 | 16 |    |    | 블라인드 및 차양   |
| 52     | 13 | 16 | 02 |    | 롤업셰이드       |
| 52     | 13 | 16 | 02 | 01 | 롤업셰이드       |

□ HS Code

- 제6303호 해설에 따르면 “이 호에는 실내용 블라인드(interior blind) : 보통 불투명하며 다양한 롤러로 된 것(예: 철도용의 것)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제6303호 품목분류에 따라 합성섬유로 만든 롤업셰이드(블라인드)의 경우 제6303.92호에 분류

[표 3-65] 제6303호 품목분류

| 품목번호 |    |    |    | 호의 용어  |
|------|----|----|----|--|
| 6303 |    |    |    | 커튼[드레이프(drape)를 포함한다]·실내용 블라인드(blind), 커튼이나 침대용 밸런스(valance) |
|      | 1  |    |    |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                                       |
|      | 12 | 00 | 00 | 합성섬유로 만든 것   |
|      | 19 | 00 | 00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
|      | 9  |    |    | 기타   |
|      | 91 | 00 | 00 | 면으로 만든 것   |
|      | 92 | 00 | 00 | 합성섬유로 만든 것   |
|      | 99 | 00 | 00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

## ② BOM, 원가 정보 및 제조공정

### □ BOM

- 폴리에스테르 원단, 알루미늄 구조물, 기타 부분품 등으로 구성

[표 3-66] 롤업셰이드(블라인드) BOM

| 원재료명      | HS Code    | 원산지 | 가격     | 합계     |
|-----------|------------|-----|--------|--------|
| 폴리에스테르 원단 | 제5407.53호  | 미상  | 15,000 | 25,000 |
| 상단 구조물    | 제7610.90호  | 미상  | 5,000  |        |
| 하단 구조물    | 제7610.90호  | 미상  | 3,000  |        |
| 캡, 부분품    | 제39류, 제59류 | 미상  | 2,000  |        |

### □ 원가 구성

[표 3-67] 롤업셰이드(블라인드) 원가 정보

| 총원가       |           |           |           |              |       | +      | 이윤 | = | 공장도<br>가격 |
|-----------|-----------|-----------|-----------|--------------|-------|--------|----|---|-----------|
| 제조원가      |           |           |           | 판매비 및<br>관리비 | 2,000 |        |    |   |           |
| 직접원가      |           |           | 제조<br>간접비 |              |       | 20,000 |    |   |           |
| 직접재료비     |           | 직접<br>노무비 |           | 직접<br>경비     |       |        |    |   |           |
| 국내산<br>재료 | 수입산<br>재료 |           |           |              |       |        |    |   |           |
| 0         | 25,000    | 20,000    |           | 2,000        | 5,000 | 52,000 |    |   |           |

### □ 제조공정

- 원단 재단 → 알루미늄 커팅 → 알루미늄 구조물과 원단 결합 및 조립 → 검사

### ③ 원산지판정

- **CTSH 충족 여부:** 6단위 기준 완제품의 HS Code(제6303.92호)와 수입산 재료의 HS Code가 모두 상이하므로 CTSH 조건 충족

[표 3-68] 롤업셰이드(블라인드) CTSH 충족 여부

| 물품명         | HS Code   | 원재료명      | HS Code    |
|-------------|-----------|-----------|------------|
| 롤업셰이드(블라인드) | 제6303.92호 | 폴리에스테르 원단 | 제5407.53호  |
|             |           | 상단 구조물    | 제7610.90호  |
|             |           | 하단 구조물    | 제7610.90호  |
|             |           | 캡, 부분품    | 제39류, 제59류 |

- **부가가치기준 충족 여부:** 44.4%로 부가가치기준 51% 기준 불충족

[표 3-69] 부가가치기준 충족 여부

| 물품명         | 공장도 가격   | 관관비 및 이윤 | 제조원가   | 수입산 재료 가격 |
|-------------|--|----------|--------|-----------|
| 롤업셰이드(블라인드) | 52,000   | 7,000    | 45,000 | 25,000    |
| 역내부가가치 비율   | $\frac{45,000 - 25,000}{45,000} \times 100 = 44.4\%$ |          |        |           |

- **단순공정 충족 여부:** 국내에서 원단 및 알루미늄을 제품 치수에 맞게 재단, 커팅하고 이를 결합하는 등 일반적인 롤업셰이드(블라인드)의 형태를 구성하기 위한 공정이 수행되었으므로 단순공정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유의사항:**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원단의 경우 국내산을 사용하는 것이 부가가치기준 충족에 유리할 수 있음

④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표 3-70] 롤업세이드(블라인드)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 구분  | 협정    | 원산지결정기준   |
|-----|-------|---|
| 유럽  | EFTA  | 1. 다른 류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생산품의 부분품이 당사국에서 재단과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또는<br>2. 자수. 다만, 사용된 자수되지 않은 생산품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     | 영국    | 1. 펠트의 것과 부직포의 것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부터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br>가. 천연섬유<br>나.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br>※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인 경우 이 부의 주석 6 참조<br>2. 기타   |
|     | EU    | 2-1. 자수한 것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br>가. 표백하지 않은 단사로부터 생산된 것<br>※ 이 부의 주석 7 참조<br>또한,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형태를 위해 절단되었거나 직접 편직된 것에 한정한다) 조각의 봉제 또는 조립으로 획득된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탄성가공 또는 고무 가공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한다)의 경우 이 부의 주석 7을 참조한다.<br>나. 자수되지 않은 직물(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은 제외)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자수되지 않은 비원산지 직물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     | 튀르키예  | 2-2. 기타 : 표백되지 않은 단사로부터 생산된 것<br>※ 이 부의 주석 7 참조<br>또한,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형태를 위해 절단되었거나 직접 편직된 것에 한정한다) 조각의 봉제 또는 조립으로 획득된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탄성가공 또는 고무 가공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한다)의 경우 이 부의 주석 7을 참조한다.   |
|     | 이스라엘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그 생산품은 한 쪽 또는 양 당사국 내에서 재단 및 봉제가 이루어지거나 달리 결합되어야 함  |
| 아시아 | 중국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또는<br>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 인도    | 비원산지 원사로부터 생산된 것  |
|     | 아세안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007호, 제5111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8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9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12호부터 제5516호까지, 제5801호부터 제5802호까지 및 제60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원산지물품인 것으로 한정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br>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 베트남   |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이상일 것   |
|     | 캄보디아  |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이상일 것   |
|     | 필리핀   |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이상일 것   |
|     | 싱가포르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에서 재단[또는 편성(knit to shape)]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에 한정한다.   |
|     | 인도네시아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호주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직물[생지(greige)]를 말한다]로부터 생산하는 경우에는 그 직물은 체약당사국에서 염색 또는 날염 및 마무리 공정을 거쳐 직접 사용이 가능하도록 변경된 것에 한정한다.   |
|     | 뉴질랜드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직물로부터 생산하는 경우에 그 직물은 체약당사국에서 염색 또는 날염 및 마무리 공정을 거친 생지(greige)인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br>2. 공제법으로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RCEP | RCEP | 2단위 세번변경기준  |
|------|------|---|
| 아메리카 | 캐나다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11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8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10호, 제5311호, 제5407호, 제5408호, 제5512호부터 제5516호까지, 제5801호부터 제5803호까지, 제5903호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미국   | 1. 미합중국 통합관세율표(HTSUS)의 제6303.92.10호에 해당하는 물품: 미합중국 통합관세율표(HTSUS)의 제5402.44.40호, 제5402.47.10호, 제5402.52.10호 또는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3.33호부터 제5403.39호까지, 제5403.42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제5801호부터 제5802호까지 및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계약당사국에서 재단[또는 편성(knit to shape)]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에 한정한다.<br>2.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3.33호부터 제5403.39호까지, 제5403.42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제5801호부터 제5802호까지 및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계약당사국에서 재단[또는 편성(knit to shape)]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에 한정한다. |
|      | 중미   | 1.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br>2. 엘살바도르: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3호부터 제5516호까지, 제5802호, 제5804호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콜롬비아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페루   |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 (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6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11호부터 제5402.39호까지, 제5402.45호부터 제5402.69호까지, 제5404.12호부터 제5404.90호까지,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
|      | 칠레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류부터 제55류까지, 제5801호부터 제5802호까지 및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계약당사국에서 재단[또는 편성(knit to shape)]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에 한정한다.  |



## 제4장

# FTA-PASS를 활용한 국내산 원산지판정 시뮬레이션

### 1. 원산지관리 통합 플랫폼 FTA-PASS 소개

#### □ 개발배경

- FTA 및 국내산 원산지증명 제도 활용을 위해서는 전문성이 필요하나 중소기업은 인력·비용 문제로 활용에 어려움 호소
  - 복잡한 원산지규정과 고도의 업무능력을 요구하는 원산지 관리를 담당자가 최소한의 지식으로 간편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개발·보급(2010년)
  - 국내산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필요한 정부·공공조달 납품 기업이 사전에 공급물품의 원산지를 확인(시뮬레이션)할 수 있도록 원산지관리 기능 고도화(2024년 12월)

#### □ 주요기능

- (정보관리) 거래처, BOM(자재명세서) 등 원산지 정보 관리
- (원산지판정) 자유무역협정(FTA 관세법) 및 국내산 원산지(대외무역법) 판정 지원
- (서류발급) FTA 원산지증명서, 국내산 원산지확인서 등 서류발급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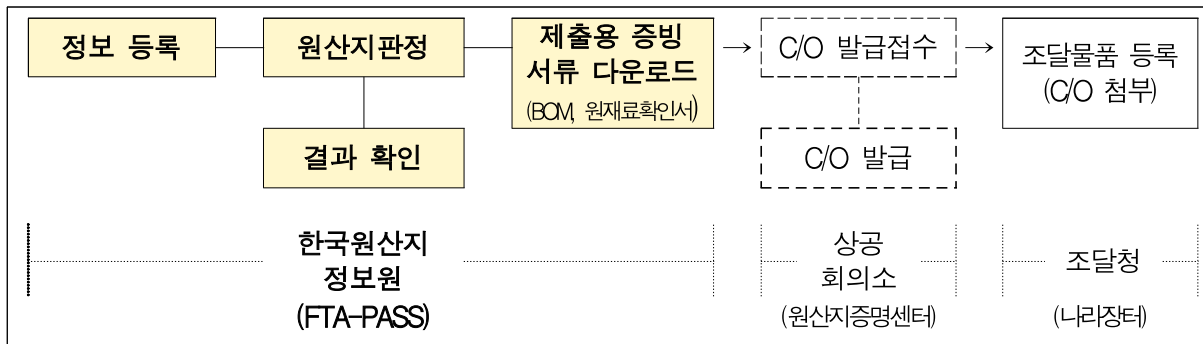
#### □ 활용절차

- 원산지 관리는 ①정보 등록, ②판정 수행, ③서류 발급의 3단계로 수행됨
  - 1단계(정보 등록) 원산지 관리에 필요한 정보 입력
  - 2단계(판정 수행) 원산지규정을 적용한 원산지판정
  - 3단계(서류 발급) 원산지 증빙서류 발급

## 2. 국내산 원산지증명 판정 시뮬레이션 서비스 개요

- (보급목적) 국내산 원산지증명 제도 활용 시 기업이 국내생산물품의 국내산 여부를 쉽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
- (활용절차) 서비스는 정보 등록 → 원산지판정 → 증빙서류 다운로드 단계로 구성
  - Excel로 작성한 물품 정보를 FTA-PASS에 입력하여 원산지를 판정하고, 국내산으로 판정된 물품의 원산지 관련 서류를 내려받아 발급기관에 C/O 발급 신청 시 함께 제출

[그림 4-1] 국내산 원산지증명 판정 시뮬레이션 활용절차



### ○ 활용절차 상세

[표 4-1] 활용절차 상세

| 단 계           | 내 용   |
|---------------|---|
| 자료 작성         | - 엑셀 양식*에 원산지 자재명세서(Origin BOM)를 작성한다.<br>· 제품 : 품번, 품명, 모델명, 제조원가, 단위, HS코드, 매출처 등<br>· 재료 : 제품품번, 품번, 재료명, 단가, 소요량, HS코드, 원산지 등<br>* 엑셀 양식 : [엑셀 양식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내려받을 수 있다. |
| 정보 등록         | - 엑셀 양식에 작성한 완제품, 원재료 정보를 일괄 등록*한다.<br>* 일괄 등록 : [BOM 엑셀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등록을 수행한다.  |
| 원산지판정         | - 물품에 적용할 원산지결정기준을 선택*하여 판정을 실행한다.<br>* '결정기준' 항목의 [리스트박스]에서 기준을 선택할 수 있다.  |
| 결과 확인         | - 물품의 원산지판정 결과에 대한 상세 내역을 확인*한다.<br>· 제품, 기준, 충족 여부, 국내산 및 수입산 재료 정보 등 안내<br>* '상세결과' 항목의 [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상세 화면이 나타난다.  |
| 제출용 증빙서류 다운로드 | - 대한상공회의소 C/O 신청 시 필요한 증빙서류*를 내려받거나 출력한다.<br>· 자재명세서, 국내산 원재료 확인서 내려받기 및 출력<br>* [자재명세서 다운로드], [국내산 원재료확인서 출력] 버튼을 클릭한다.  |

### 3. (자료 작성) 원산지판정용 BOM 구성

□ FTA-PASS를 활용하여 원산지를 관리하기 위한 BOM 자료 준비

[표 4-2] 참고 예시-국내산 원산지증명서 판정 가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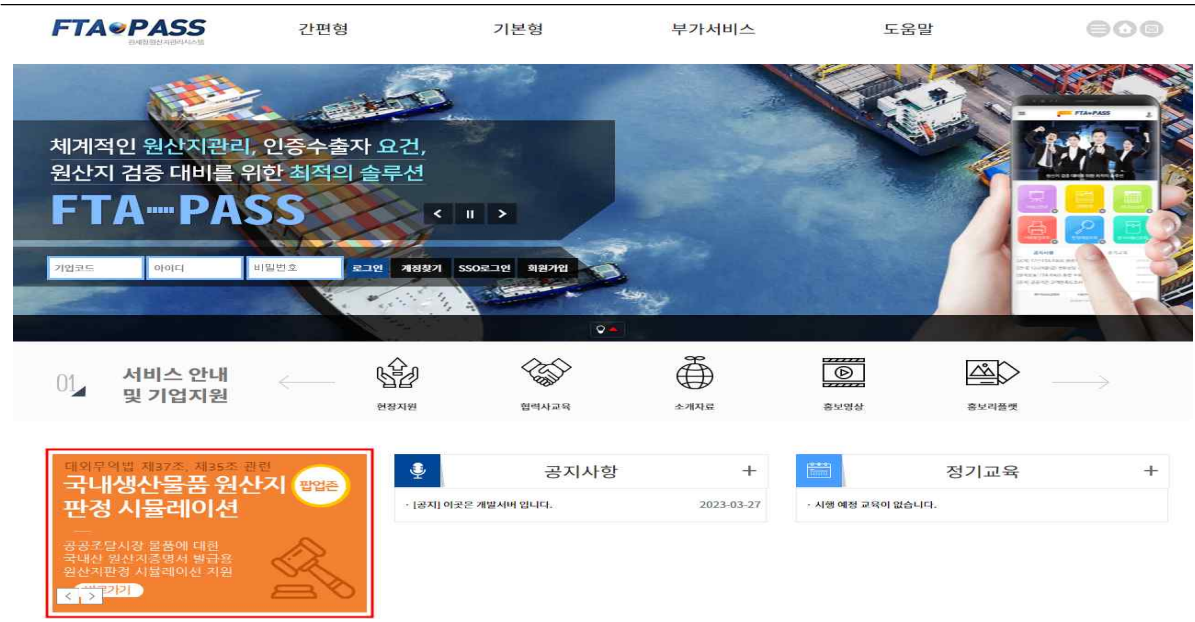
|   | <b>물품명</b><br>실내 LED 다운라이트            |         |     |     |           |    |          |           |    |       |           |    |      |           |    |           |           |    |         |           |    |   |
|--|---------------------------------------|---------|-----|-----|-----------|----|----------|-----------|----|-------|-----------|----|------|-----------|----|-----------|-----------|----|---------|-----------|----|---|
|  | <b>조달청<br/>물품분류번호</b><br>3911151502   |         |     |     |           |    |          |           |    |       |           |    |      |           |    |           |           |    |         |           |    |   |
|  | <b>HS Code</b><br>제9405.11호           |         |     |     |           |    |          |           |    |       |           |    |      |           |    |           |           |    |         |           |    |   |
| <b>BOM</b>   |                                       |         |     |     |           |    |          |           |    |       |           |    |      |           |    |           |           |    |         |           |    |   |
| <table border="1"> <thead> <tr> <th>원재료명</th> <th>HS Code</th> <th>원산지</th> </tr> </thead> <tbody> <tr> <td>PCB</td> <td>제8534.00호</td> <td>미상</td> </tr> <tr> <td>LED Chip</td> <td>제8541.41호</td> <td>미상</td> </tr> <tr> <td>WAFER</td> <td>제8542.31호</td> <td>미상</td> </tr> <tr> <td>WIRE</td> <td>제8544.42호</td> <td>미상</td> </tr> <tr> <td>Converter</td> <td>제8504.40호</td> <td>미상</td> </tr> <tr> <td>Housing</td> <td>제9405.99호</td> <td>미상</td> </tr> </tbody> </table> | 원재료명                                  | HS Code | 원산지 | PCB | 제8534.00호 | 미상 | LED Chip | 제8541.41호 | 미상 | WAFER | 제8542.31호 | 미상 | WIRE | 제8544.42호 | 미상 | Converter | 제8504.40호 | 미상 | Housing | 제9405.99호 | 미상 | <b>원가 정보</b><br> |
| 원재료명   | HS Code                               | 원산지     |     |     |           |    |          |           |    |       |           |    |      |           |    |           |           |    |         |           |    |   |
| PCB  | 제8534.00호                             | 미상      |     |     |           |    |          |           |    |       |           |    |      |           |    |           |           |    |         |           |    |   |
| LED Chip   | 제8541.41호                             | 미상      |     |     |           |    |          |           |    |       |           |    |      |           |    |           |           |    |         |           |    |   |
| WAFER  | 제8542.31호                             | 미상      |     |     |           |    |          |           |    |       |           |    |      |           |    |           |           |    |         |           |    |   |
| WIRE   | 제8544.42호                             | 미상      |     |     |           |    |          |           |    |       |           |    |      |           |    |           |           |    |         |           |    |   |
| Converter  | 제8504.40호                             | 미상      |     |     |           |    |          |           |    |       |           |    |      |           |    |           |           |    |         |           |    |   |
| Housing  | 제9405.99호                             | 미상      |     |     |           |    |          |           |    |       |           |    |      |           |    |           |           |    |         |           |    |   |
| <b>제조공정</b>  |                                       |         |     |     |           |    |          |           |    |       |           |    |      |           |    |           |           |    |         |           |    |   |
| LED 모듈 제작(납땀) → Converter 결합 → 결선 및 배선 → 케이스 조립 → 검사 → 출고  |                                       |         |     |     |           |    |          |           |    |       |           |    |      |           |    |           |           |    |         |           |    |   |
| <b>CTSH 충족 여부</b><br><br><b>충족</b>   | <b>부가가치기준 충족 여부</b><br><br><b>불충족</b> |         |     |     |           |    |          |           |    |       |           |    |      |           |    |           |           |    |         |           |    |   |
| <b>단순가공 충족 여부</b><br><br><b>충족</b>   |                                       |         |     |     |           |    |          |           |    |       |           |    |      |           |    |           |           |    |         |           |    |   |
| <b>유의사항</b>  |                                       |         |     |     |           |    |          |           |    |       |           |    |      |           |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산지를 미상으로 기재한 원재료는 실제 해당 물품이 국내에서 생산되었다 할지라도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제6항에 따라 수입원료로 취급함</li> </ul>  |                                       |         |     |     |           |    |          |           |    |       |           |    |      |           |    |           |           |    |         |           |    |   |

#### 4. (정보 등록) FTA-PASS 접속 및 작성자료 등록

□ FTA-PASS 접속(비회원도 가능)

o FTA-PASS 누리집(www.ftapass.or.kr)에 접속한 후 좌측 하단 배너 클릭

[그림 4-2] FTA-PASS 홈페이지 화면



□ 국내산 원산지증명서 판정 시뮬레이션 서비스 안내

o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판정 시뮬레이션 시작

[그림 4-3] 국내산 원산지증명서 판정 시뮬레이션 화면



□ (자료등록) 원산지판정을 위한 기초정보 등록

- 자재명세서(BOM) 엑셀 양식 작성(화면에서 개별 등록 가능)

[그림 4-4] 자재명세서(BOM) 작성 화면

| ① 완제품 입력 시트           |              |            |       |              |        |      |
|-----------------------|--------------|------------|-------|--------------|--------|------|
| 공급물품(완제품) 정보          |              |            |       |              |        |      |
| *완제품 물품번호<br>(임의로 지정) | *완제품명        | 모델명        | 제조원가  | 단위<br>(코드참조) | *HS코드  | 매출처  |
| A-100                 | 실내 LED 다운라이트 | 3911151502 | 26500 | EA           | 940511 | 한국전자 |

| ② 원재료 입력 시트 |                       |           |    |      |     |              |        |               |                  |                  |     |
|-------------|-----------------------|-----------|----|------|-----|--------------|--------|---------------|------------------|------------------|-----|
| 구매 재료 정보    |                       |           |    |      |     |              |        |               |                  |                  |     |
| *완제품 물품번호   | *원재료 물품번호<br>(임의로 지정) | *원재료명     | 규격 | 단가   | 소요량 | 단위<br>(코드참조) | *HS코드  | 원산지<br>(코드참조) | 완전생산여부<br>(코드참조) | 단순가공여부<br>(코드참조) | 구매처 |
| A-100       | 001                   | PCB       |    | 700  | 1   | EA           | 853400 |               | N                | N                | A전자 |
| A-100       | 002                   | LED Chip  |    | 900  | 1   | EA           | 854141 |               | N                | N                | B전자 |
| A-100       | 003                   | WAFER     |    | 100  | 1   | EA           | 854231 |               | N                | N                | C전자 |
| A-100       | 004                   | WIRE      |    | 900  | 1   | EA           | 854442 |               | N                | N                | D전자 |
| A-100       | 005                   | Converter |    | 6000 | 1   | EA           | 850440 |               | N                | N                | E전자 |
| A-100       | 006                   | Housing   |    | 6000 | 1   | EA           | 950599 |               | N                | N                | F전자 |

- 작성한 엑셀 자료 등록(Excel → FTA-PASS)

[그림 4-5] 엑셀 자료 등록 화면

원제품 정보

입력 시제 엑셀 양식다운로드 BOM엑셀등록

| 번호 | *물품번호 | *품명          | 모델명        | 제조원가  | 단위      | *HS코드  | 매출처명 | 오류사항 |
|----|-------|--------------|------------|-------|---------|--------|------|------|
| 1  | A-100 | 실내 LED 다운라이트 | 3911151502 | 26500 | EA (개수) | 940511 | 한국전자 |      |

보기 1 - 1 / 1      페이지 1 / 1      100      불러올것

---

원재료 정보

추가 선택삭제

| 번호 | *물품번호 | *품명       | 모델명 | 단가   | 소요량 | 단위      | *HS코드  | *원산지                                | 완전생산여부   | 단순가공여부   | 구매처명 |
|----|-------|-----------|-----|------|-----|---------|--------|-------------------------------------|--|--|------|
| 1  | 001   | PCB       |     | 700  | 1   | EA (개수) | 853400 | <input checked="" type="radio"/> 검색 | <input type="radio"/> 예 <input checked="" type="radio"/> 아니오 | <input type="radio"/> 예 <input checked="" type="radio"/> 아니오 | A전자  |
| 2  | 002   | LED Chip  |     | 900  | 1   | EA (개수) | 854141 | <input checked="" type="radio"/> 검색 | <input type="radio"/> 예 <input checked="" type="radio"/> 아니오 | <input type="radio"/> 예 <input checked="" type="radio"/> 아니오 | B전자  |
| 3  | 003   | WAFER     |     | 100  | 1   | EA (개수) | 854231 | <input checked="" type="radio"/> 검색 | <input type="radio"/> 예 <input checked="" type="radio"/> 아니오 | <input type="radio"/> 예 <input checked="" type="radio"/> 아니오 | C전자  |
| 4  | 004   | WIRE      |     | 300  | 1   | EA (개수) | 854442 | <input checked="" type="radio"/> 검색 | <input type="radio"/> 예 <input checked="" type="radio"/> 아니오 | <input type="radio"/> 예 <input checked="" type="radio"/> 아니오 | D전자  |
| 5  | 005   | Converter |     | 6000 | 1   | EA (개수) | 850440 | <input checked="" type="radio"/> 검색 | <input type="radio"/> 예 <input checked="" type="radio"/> 아니오 | <input type="radio"/> 예 <input checked="" type="radio"/> 아니오 | E전자  |
| 6  | 006   | Housing   |     | 6000 | 1   | EA (개수) | 950599 | <input checked="" type="radio"/> 검색 | <input type="radio"/> 예 <input checked="" type="radio"/> 아니오 | <input type="radio"/> 예 <input checked="" type="radio"/> 아니오 | F전자  |

보기 1 - 6 / 6      페이지 1 / 1      100      불러올것

이전 다음

## 5. (원산지판정) 원산지판정 수행

### □ 국내생산물품 원산지판정 및 결과 확인

- 판정대상 물품을 선택하여 원산지판정 실시

[그림 4-6] 원산지판정 화면-1

▶ 판정대상 완제품 정보

| 물품번호    | 품명           | 단가     | 기준년도   | H56단위  | 협정 | 대분류 | 중분류 | 결정기준     | 판정결과 | 상세결과 |
|---------|--------------|--------|--------|--------|----|-----|-----|----------|------|------|
| 1 A-100 | 실내 LED 다운라이트 | 26,500 | HS2022 | 940511 | 한국 |     |     | CTSH+RVC | 불충족  | 보기   |

보기 1 / 1 / 1

원산지 판정 < 이전 처음으로

- 판정결과 : [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세부결과 확인

[그림 4-7] 원산지판정 화면-2

▶ 판정대상 완제품 정보

| 물품번호    | 품명           | 단가     | 기준년도   | H56단위  | 협정 | 대분류 | 중분류 | 결정기준     | 판정결과 | 상세결과 |
|---------|--------------|--------|--------|--------|----|-----|-----|----------|------|------|
| 1 A-100 | 실내 LED 다운라이트 | 26,500 | HS2022 | 940511 | 한국 |     |     | CTSH+RVC | 불충족  | 보기   |

상세결과

|      |      |              |      |                     |
|------|------|--------------|------|---------------------|
| 판정대상 | 물품번호 | A-100        | 세번   | 940511 [HS2022]     |
| 판정대상 | 물품명  | 실내 LED 다운라이트 | 판정일시 | 2025-01-08 15:37:08 |
| 판정결과 | 충족여부 | 불충족          |      |                     |

세번변경기준(충족)    부가기준(불충족)

| 국내산  |     |    |    |    | 수입산   |           |        |       |    |
|------|-----|----|----|----|-------|-----------|--------|-------|----|
| 물품번호 | 물품명 | 세번 | 가격 | 충족 | 물품번호  | 물품명       | 세번     | 가격    | 충족 |
|      |     |    |    |    | 1 001 | PCB       | 853400 | 700   | 예  |
|      |     |    |    |    | 2 002 | LED Chip  | 854141 | 900   | 예  |
|      |     |    |    |    | 3 003 | WAFER     | 854231 | 100   | 예  |
|      |     |    |    |    | 4 004 | WIRE      | 854442 | 300   | 예  |
|      |     |    |    |    | 5 005 | Converter | 850440 | 6,000 | 예  |
|      |     |    |    |    | 6 006 | Housing   | 950599 | 6,000 | 예  |

원산지 판정 < 이전 처음으로

- o 원산지판정 결과 안내
  - 세번변경기준(CTSH)

[그림 4-8] 세번변경기준 충족 여부 화면

상세결과

|      |      |              |      |                     |
|------|------|--------------|------|---------------------|
| 판정대상 | 물품번호 | A-100        | 세번   | 940511 [HS2022]     |
|      | 물품명  | 실내 LED 다운라이트 | 판정일시 | 2025-01-08 15:37:08 |
| 판정결과 | 충족여부 | <b>불충족</b>   |      |                     |

세번변경기준(충족)    부가가치기준(불충족)

| 국내산  |     |    |    |    |  | 수입산  |     |           |        |       |   |
|------|-----|----|----|----|--|------|-----|-----------|--------|-------|---|
| 물품번호 | 물품명 | 세번 | 가격 | 충족 |  | 물품번호 | 물품명 | 세번        | 가격     | 충족    |   |
|      |     |    |    |    |  | 1    | 001 | PCB       | 853400 | 700   | 예 |
|      |     |    |    |    |  | 2    | 002 | LED Chip  | 854141 | 900   | 예 |
|      |     |    |    |    |  | 3    | 003 | WAFER     | 854231 | 100   | 예 |
|      |     |    |    |    |  | 4    | 004 | WIRE      | 854442 | 300   | 예 |
|      |     |    |    |    |  | 5    | 005 | Converter | 850440 | 6,000 | 예 |
|      |     |    |    |    |  | 6    | 006 | Housing   | 950599 | 6,000 | 예 |

- 부가가치기준(RVC 51% 이상)

[그림 4-9] 부가가치기준 충족 여부 화면

|            |  |
|------------|--|
| 세번변경기준(충족) | <b>부가가치기준(불충족)</b>   |
| 기준         | RVC 51% 이상   |
| 결과         | 47% = ( 26,500 - 14,000 ) / 26,500 × 100   |
| 공식         | $RVC = ( \text{제조원가} - \text{수입산 재료비(CIF가격기준)} ) / \text{제조원가} \times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조원가(대외무역관리규정 2항)</li> <li>- 물품의 공장도 공급가액에서 이윤과 판매·관리비를 제외한 금액</li> <li>- 예외적인 경우, 원가계산용역기관이 계산한 원가로 대체가능</li> </ul> |

| 국내산  |     |    |    |  | 수입산  |     |           |        |       |
|------|-----|----|----|--|------|-----|-----------|--------|-------|
| 물품번호 | 물품명 | 세번 | 가격 |  | 물품번호 | 물품명 | 세번        | 가격     |       |
|      |     |    |    |  | 1    | 001 | PCB       | 853400 | 700   |
|      |     |    |    |  | 2    | 002 | LED Chip  | 854141 | 900   |
|      |     |    |    |  | 3    | 003 | WAFER     | 854231 | 100   |
|      |     |    |    |  | 4    | 004 | WIRE      | 854442 | 300   |
|      |     |    |    |  | 5    | 005 | Converter | 850440 | 6,000 |
|      |     |    |    |  | 6    | 006 | Housing   | 950599 | 6,000 |

## 6. (서류 다운로드) 대한상공회의소 제출서류 다운로드

□ 대한상공회의소 C/O 신청 시 필요한 제출용 서류 작성

○ 원산지증명서 신청 단계에서 제출이 필요한 서류 다운로드

[표 4-3] 국내산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

| 연번 | 내용  | FTA-PASS           |
|----|---|--------------------|
| 1  | 물품 설명 및 제조공정도   |                    |
| 2  | 공장등록증 또는 입가공계약서 사본  |                    |
| 3  | (생산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                    |
| 4  | 자재명세서(BOM)  | 자재명세서 생성 및 다운로드 지원 |
| 5  | 제조원가 입증서류(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                    |
| 6  | 원재료 입증서류<br>- 수입산 원료 : 수입신고필증,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br>- 국내산 원료 : 국내산 원산지증명서 또는 원재료 확인서 | 국내산 원재료확인서 출력 지원   |
| 7  | 천일염 국내산 원산지증명서 신청인 약약서  | 서식 다운로드 지원         |

- 제출서류 다운로드 화면

[그림 4-10] 제출서류 다운로드 화면

The screenshot shows the FTA-PASS portal interface. At the top, there are navigation tabs like '기준정보', '거래정보', '판정관리', etc. Below that, there's a search bar with '물품번호' and '물품명 led'. A table lists items with columns for '물품번호', '물품명', and '판정일시'. A sidebar on the right shows '판정대상' and '판정결과' details. At the bottom, there are buttons for '재판정', '선택삭제', '자재명세서 다운로드', and '국내산 원재료확인서 출력'. A red box highlights the '자재명세서 다운로드' button. Another red box highlights the '천일염 신청인 약약서 다운로드' button.



- 자재명세서(BOM) 다운로드

[그림 4-11] 자재명세서(BOM) 다운로드

| A  | B         | C                | D                | E  | F                            | G     | H    | I       | J                | K       |
|----|-----------|------------------|------------------|--|------------------------------|-------|------|---------|------------------|---------|
| 연번 | 1. 품명     | 2. HS CODE (6단위) | 3. 원산지 (국내산/수입산) | 3-1. 국내산일 경우 원전생산 여부(예/아니오) * '예'만 표기가 가능하며 아닐시 수입산 선택 ) | 3-2. 수입산일 경우 단순가공 여부 (예/아니오) | 4.소요량 | 5.단위 | 6.단가(원) | 7. 가격 (소요량 X 단가) | 8. 구매처명 |
| 1  | PCB       | 8534.40          | 수입산              |  | 아니오                          | 1     | EA   | 700     | 700              | A전자     |
| 2  | LED Chip  | 8541.14          | 수입산              |  | 아니오                          | 1     | EA   | 900     | 900              | B전자     |
| 3  | WAFER     | 8542.23          | 수입산              |  | 아니오                          | 1     | EA   | 100     | 100              | C전자     |
| 4  | WIRE      | 8544.44          | 수입산              |  | 아니오                          | 1     | EA   | 300     | 300              | D전자     |
| 5  | Converter | 8504.44          | 수입산              |  | 아니오                          | 1     | EA   | 6000    | 6000             | E전자     |
| 6  | Housing   | 9505.59          | 수입산              |  | 아니오                          | 1     | EA   | 6000    | 6000             | F전자     |

- 국내산 원재료확인서 출력

[그림 4-12] 국내산 원재료 확인서 출력

[국내산 원산지증명서 서식의 국내산 원재료 확인서

국내산 원재료 확인서

(1쪽 중 1쪽)

1. 발급번호 :

2. 공급하는 자

|                                     |                         |
|-------------------------------------|-------------------------|
|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 테스트기업1                              | 211-82-16919            |
| 대표자성명                               | 전화번호(Tel) 000-0000-0000 |
| 일상속                                 | 팩스번호(Fax) 0316000704    |
|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탑로205번길 8 (아탑동)     |                         |
| 전자우편주소(E-mail) ftapase@origin.or.kr |                         |

3. 공급받는 자

|                |           |
|----------------|-----------|
|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 한국전자           |           |
| 대표자성명          | 전화번호(Tel) |
|                | 팩스번호(Fax) |
| 주소             |           |
| 전자우편주소(E-mail) |           |

4. 공급 품목 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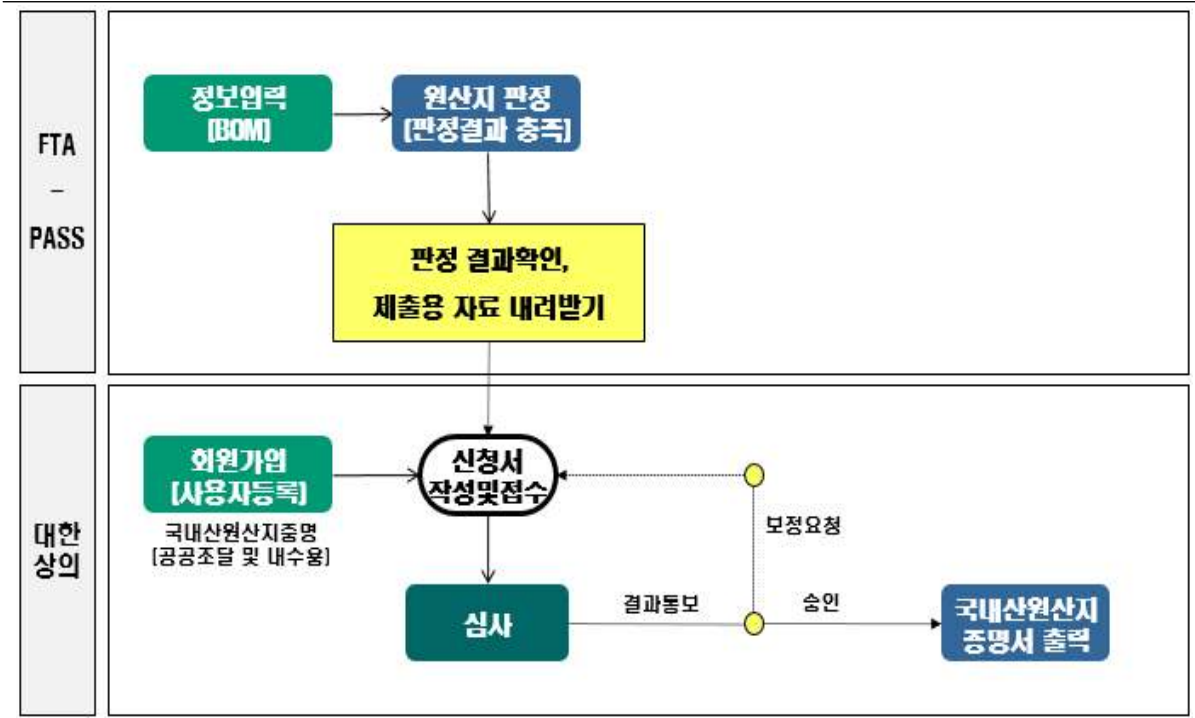
| 연번 | 품목번호 (HS 6단위) | 품명·규격                     | 단순가공 수행 여부 (해당하는 곳에 [V]) |         | 원산지 판정기준 (해당하는 곳에 [V])                          |     |       |
|----|---------------|---------------------------|--------------------------|---------|---|-----|-------|
|    |               |                           | 단순가공                     | 단순가공 효과 | 원산지 판정기준 선택                                     |     |       |
|    |               |                           |                          |         | 총괄  | 분괄  |       |
|    |               |                           |                          |         | [Y]   | [N] |       |
| 1  | 940511        | 실내 LED 다운라이트 / 3011151502 |                          | Y       | <input checked="" type="checkbox"/> STSH+RVC51% | [ ] | [ V ] |
|    |               |                           |                          |         | <input type="checkbox"/> RVC85%                 |     |       |
|    |               |                           |                          |         | <input type="checkbox"/> NO                     |     |       |

「대외무역관리규칙」 제26조에 따른 원산지판정기준에 따른 국내산 원재료를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작 성 자 : 일상속 *Yoon Sangsook*  
 과 목 위 : 대표  
 상호 및 주소 : 테스트기업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탑로205번길 8 (아탑동)  
 작 성 일 : 2025년 01월 08일 (2025/01/08)

※ (참고) FTA-PASS를 활용한 국내산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업무 프로세스

[그림 4-13] FTA-PASS를 활용한 국내산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업무 프로세스



부 록

용어집

□ 용어 설명

| 용어                   | 설명   |
|----------------------|--|
| HS Cod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HS Code란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를 기초로 특정 품목에 부여된 분류번호임</li> <li>품목분류번호, 세번이라고 부르기도 함</li> </ul>              |
| 통칙<br>(General Rul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품목분류의 기본 원칙을 정해놓은 것으로 제1호부터 제6호까지로 구성</li> </ul>  |
| 주<br>(Not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속한 위치에 따라 부주, 류주, 소호주로 구분되며, 사용된 용어, 문구의 뜻을 설명하거나 적용 범위· 기준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li> </ul>  |
| 부<br>(Section)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러 가지 류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대분류에 속함</li> </ul>  |
| 류<br>(Chapter)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HS Code의 앞 두 자리(2단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중분류에 속함</li> </ul>   |
| 호<br>(Heading)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HS Code의 앞 네 자리(4단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소분류에 속함</li> </ul>   |
| 소호<br>(Sub-Heading)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HS Code의 앞 여섯 자리(6단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세분류에 속함</li> </ul>  |
| CC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단위 세번변경기준(Change of Chapter)</li> </ul>  |
| CTH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4단위 세번변경기준(Change of Tariff Heading)</li> </ul>   |
| CTSH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6단위 세번변경기준(Change of Tariff Sub-Heading)</li> </ul>   |
| RVC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Regional Value Contents method의 약자</li> <li>부가가치기준 산정 시 역내가치 비율이 일정 비율 이상일 것을 요구하는 방식</li> <li>FTA협정상 RVC 계산방식은 공제법, 집적법, 순원가법으로 나눌 수 있음</li> </ul> |
| WO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Wholly Obtained or entirely produced의 약자</li> <li>다른 나라의 원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전적으로 당사국에서 완전하게 획득 또는 생산된 경우를 말함</li> </ul>                                   |
| 집적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품의 생산에 사용한 원산지재료비가 상품의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하는 방식</li> </ul>  |
| 공제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품가격에서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을 제외한 가치를 역내가치로 보는 방식</li> </ul>   |
| 순원가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물품의 순원가에서 비원산지재료비를 공제하여 계산하는 방식</li> </ul>  |
| CIF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Cost, Insurance, and Freight의 약자</li> <li>매도인이 물품의 비용(Cost), 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손해나 분실에 대한 보험료(Insurance), 운임(Freight)을 부담하는 가격조건</li> </ul>             |

무료 원산지관리시스템인 **FTA-PASS**로 체계적인 FTA 원산지관리 하세요!



▶ 시스템 바로가기 : <https://www.ftapass.or.kr>

① FTA-PASS 개요

- 시스템 개요
- 제조·수출기업의 체계적인 FTA 원산지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관세청 주관으로 한국원산지정보원에서 무료로 보급하는 원산지관리시스템
- 활용상 이점

원산지관리 자동화로 업무효율성 UP

복잡한 원산지규정의 오류발생 예방

전문 시스템관리로 원산지검증 체계적 대응

② FTA-PASS 사용절차

|   |  |   |  |
|---|--|---|--|
| <p><b>1 정보등록</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산지관리에 필요한 정보 등록</li> </ul> | <p><b>2 원산지판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정별 원산지규정 충족 여부 판정</li> </ul> | <p><b>3 서류발급</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산지증명서류 발급</li> <li>· 원산지증빙서류 발급(자동)</li> </ul> | <p><b>4 검증대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류발급 이력관리(자동)</li> <li>· 관련자료 영구 보관</li> </ul> |
|---|--|---|--|

③ FTA-PASS 활용유형

| 기본형  | 간편형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산지증빙서류 관리가 필요한 기업</li> <li>- 원산지소명서, Form I, 생산공정 등</li> <li>· 인증수출자 신청 및 점검이 필요한 기업</li> <li>※ 재고관리기능: 수시 입출고로 인해 재고관리기법을 이용하여 원산지관리</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OM 구성이 단순한 기업</li> <li>· 원산지확인서를 주로 발급하는 기업</li> </ul> |

문의상담 : 1544-0645 (문의시간 : 평일 08:00 ~ 17:00)  
 문의메일 : [fta-pass@origin.or.kr](mailto:fta-pass@origin.or.kr)